

INVENTION & PATENT

2012 June

06



INVENTION & PATENT Vol. 431

발명과 특허, 더 큰 대한민국을 만
제47회 발명의 날 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Focus]

라이벌 업체의
복잡 미묘한 상표 이야기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드디어 특허전쟁을 위한 칼을 뽑다

Contents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

Column

- 28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드디어 특허전쟁을 위한 칼을 뽑다
- 34 삼성 - 애플, 그 끝나지 않는 전쟁
- 38 라이벌 업체의 복잡 미묘한 상표 이야기
- 42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Report

- 50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 56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심사
- 62 한미 FTA와 의약품허가 - 특허 연계 제도
- 66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Information



- 68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72 KIPO NEWS 특허청 소식
- 75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 76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81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 82 발명만화 몰래발명이야기
- 84 건강하게 삽시다 다이어트, 빠르게 대신 현명하게 하자!
- 87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2012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군 전투력을 향상하고
예비 산업인력의 지식재산 창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2012년 군장병 발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군장병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추진기관

주 최 | 특허청, 국방부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후 원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신청기간

발명 아이디어 제출 | 2012. 5. 1~6. 30
발명품 프로토타입 제출 | 2012. 9. 28(금) 마감(아이디어 선정작에 한함)
대회 최종 심사 | 10월 중

출품내용

군 생활의 모든 용품의 활용 개선 및 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참가지격

대한민국 전 군부대 간부 및 병사(군무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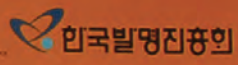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ic.org> 사업 담당자

※ 사업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강릉, 강원, 경기, 경기북부,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부산남부, 부천, 부평, 서산, 수원,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춘천, 충남, 충북, 충주, 태백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사업 담당자 02-3459-2862, nyazz@kipa.org),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11-1900)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총 79명 포상

금탑산업훈장에 유진녕 (주)LG화학 부사장

5월 18일 오후 2시,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개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5월 18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총 79명의 발명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호원 특허청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수상기업 임직원 등 6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은 유진녕 (주)LG화학 부사장(기술연구원장)에게 돌아갔다. 유진녕 부사장은 전기자동차용 전지와 3D TV의 핵심소재인 FPR(편광필름패턴) 등 신소재 개발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기존 인삼을 가공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특이 성분 함량을 높은 선삼(仙蔘)을 개발한 김복득 (주)진생사이언스 대표이사과 국내 최초로 LCD 핵심부품의 제작공정을 국산화한 류도현 (주)탐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이외에 박성호 (주)포스코 상무와 안병철 LG디스플레이 전무가 동탑산업훈장을, 김영진 (주)대우건설 수석연구위원과 박경양 (주)하렉스인포텍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정호진 승진산업(주) 대표이사과 황인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석



▶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김호원 특허청장이 수상자들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김황식 국무총리(중앙)와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좌) 등 주요내빈들이 수상자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자들에게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탐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매년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발명자 1명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하여 왔다. 금년도 「올해의 발명왕」의 영예는 현대자동차(주) 김연호 파트장이 안았다. 김 파트장은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무했던 시절에 모터 자동변속기 일체형 구조의 풀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개발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념축사에서 “지난해 우리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발명이 여러분이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덕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하였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발명진흥회는 발명가 여러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주최하고, 발명가족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 세미나 참가 지원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융합형 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올해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우수 발명품을 비롯해 국내에 단 한 점 남아 있는 진품 축우기(금영 축우기)가 특별 전시되었고, 우수발명품 전시관에서는 첨단 발명품과 함께 실생활 속 아이디어를 구현한 생활 발명품도 전시되었다.



▶ 김호원 특허청장(우)이 올해의 발명왕인 현대자동차(주) 김연호 파트장(좌)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퓨전 국악 그룹 「황진이」 팀이 식전 공연을 하고 있다.



김 황 식
국 무 총 리

발명가 여러분은 언제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제47회 발명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명과 기술개발에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명인 여러분,
예전에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으로 경쟁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장 질서를 뒤바꾸는 아이디어 하
나가 국가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하지만 두 기업의 이

익은 전체 이익의 91%나 됩니다.

이것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조해 내는 발명과 특허의 힘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자체가 기업 이익'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거세지고 특허가 경쟁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한 무기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총성 없는 두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분야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 시행에 매진해 왔습니다.

중국 역시 2008년부터 세계적 교육기관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를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관련 법률 제정과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¹⁾이라는 주춧돌을 놓았고, 올해부터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허출원 세계 4위라는 발명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학업 성취도²⁾가 보여주듯이 우수한 인적자원도 풍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기초여건이 탄탄하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단기간에 지식재

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우리의 지식재산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공정하게 거래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지식재산이 국가 성장의 에너지라면, 발명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이자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발명이 여러분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발명이 여러분이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발명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 5월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시행, 동년 7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2)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국제학업성취도 조사 결과, 수학 1위, 과학 3위임



김 광 림
한국발명진흥회장

더 큰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발명가족 여러분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식 국무총리님, 내외 귀빈 여러분,
밤을 낮 삼아, 연구실을 집 삼아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로부터 570년 전 1442년 5월 19일 세종대왕은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도구인 측우기의 발명을 온 나라에 반포하셨습니다.

이탈리아가 1639년부터, 프랑스 1658년·영국은 1677년부터 강수량이 측정되는 도구가 사용된 것에 비추어볼 때 유럽 열강(列強)보다 200여 년 이상 앞선 발명품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1957년부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온 지 올해로 4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20세기를 지나오며 세계경제는 전기, 자동차, 컴퓨터 등 세계 최초의 발명품들이 산업화 시대와 맞물려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21세기의 첫 10년까지도 휴대폰, 반도체, LCD와 LED 등, R&D 투자에 대한 성과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특허강국·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1조 달러 무역대국으로 발돋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은 ‘스티브잡스’와 같이 기존의 기술을 잘 엮어내는 풍부한 상상력을 산업화 하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Research & Development(R&D), 기술개발의 시대를 넘어 Imagination & Development(I&D), 상상개발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 <구글>, SNS 시대 국내 대표기업<카카오>의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며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의 흥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가족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훌륭한 기술을 만나 제품화로 이어져도, 특허·실용신안과 같은 지식재산의 울타리 없이는 그 성과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998년, 일본 <소니>사의 워크맨 이후 최고의 휴대용 음향발명품으로 인정받았던 MP3 플레이어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제품화까지 이어졌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등 지식재산 관리의 어려

움으로 인해 결국 2003년에 회사가 폐업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창의력, 융합기술로 무장한 애플의 iPod(아이팟)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울타리를 두텁게 하는 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며 발명진흥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명가족 여러분!

발명진흥회는 발명가 여러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주최하고 발명가족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 세미나 참가 지원기회를 확대하는 등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융합형 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품은 사라져도 기술은 이어지고, 다른 제품에 더해져, 또 다른 지식재산으로 이어지면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디어의 발명화, 발명의 특허화, 특허의 융합화를 통해 오늘 행사의 주제와 같이 더 큰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발명진흥회 200여 임직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발명가족 여러분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해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인 여러분과 가족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에게는 마음으로 부터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수상자들

훈격		포상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훈장	금탑	(주)LG화학	부사장	유진녕
	은탑	(주)진생사이언스	대표이사	김복득
		(주)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류도현
	동탑	(주)포스코	상무	박성호
		LG디스플레이(주)	전무	안병철
	철탑	(주)대우건설	수석연구위원	김영진
		(주)하렉스인포텍	대표이사	박경양
	석탑	승진산업(주)	대표이사	정호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인구	
포장	산업포장	LG전자(주)	수석연구원	김진필
		SK하이닉스(주)	연구위원	복철규
		한일이화(주)	부장	김기성
		한국발명진흥회	부장	이경표
	근정포장	강원대학교	교수	윤경구
대통령표창	(주)주산물산	대표이사	장인영	
	(주)물사랑	대표이사	임상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대영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유병춘	
	(주)엘엠에스 (단체)			
	현대자동차(주)	파트장	김연호	
국무총리표창	(주)포티스	연구소장	정흥기	
	광덕신약(주)	대표이사	권은녀	
	(주)덴토존	대표이사	구자형	
	영동대학교	교수	윤상원	
	(주)원컴피알	대표이사	이봉원	
	AP시스템(주) (단체)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주)창성에이스산업	대표이사	이의용	
	(주)두배시스템	대표이사	이배	
	(주)일경실업	대표이사	최광원	
	-	-	조창균	
	금호전기(주)	선임연구원	반태현	
	(주)삼양세라텍	상무	주경	
	전자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부식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하국현	
	한양대학교	1학년	김준규	
영동대학교	3학년	이진영		





훈격	포상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지식경제부장관표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장	장태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팀장	박검진
	고창남초등학교	교사	노회현
	대전수정초등학교	교사	천가경
	보성고등학교 (단체)		
	창원상공회의소 (단체)		
특허청장표창	(주)한국전통의학연구소	대표이사	황성연
	(주)일성종합기계	전무이사	지효근
	(주)태강	대표이사	강원식
	(주)대산기업	대표이사	박병성
	목우산업	대표	김세홍
	AOG SYSTEM	대표	이희곤
	온누리K-1방수(주)	대표이사	하태훈
	에스코정공(주)	상무	변용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심태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영제
	서울이수중학교	3학년	한지흠
	포항장성고등학교	2학년	박한솔
	영동대학교	3학년	양혜진
	연세대학교	4학년	김승찬
	성균관대학교	4학년	임종민
	특허법인 대아	대표변리사	정병직
	R&D특허센터	팀장	송경태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오종환
	강북중학교	교사	전중호
	제주대학교	교수	현정석
(주)씨케이앤비 (단체)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주)아이디어라인	대표이사	차희장
	삼성파워텍(주)	대표이사	김형조
	(주)명진아이앤씨	대표이사	윤창근
	(주)군장조선	대표이사	고호남
	태양산업	대표	민준기
	프라미스	대표	조광영
	한국사회복지발전	대표	박윤구
	사우고등학교	1학년	윤도성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임동곤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도홍준
	경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지혜
	한양대학교	2학년	이득기
	건국대학교	4학년	하성민
	(주)다산아이피앤아이	대표이사	김근호
	진해용원중학교	교사	윤정식
	바이오코리아(주) (단체)		

발명의 날과 측우기



〈금영측우기(보물 561호)〉

이번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는 금영측우기가 특별 전시되었다. 이 측우기는 국내에 한 대 남은 진품측우기로서 현재 보물 561호로 지정되어있다. 이러한 측우기가 발명의 날 기념식에 전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발명의 날이 조선 세종 때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글, 금속활자, 거북선 등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우수한 발명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수 발명품들 중에 왜 측우기가 공식 사용된 날을 발명의 날의 기원으로 삼았을까?

조선 세종 때 고안된 측우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되어 사용됐다. 서양에서는 163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B.가스텔리가 처음 측우기로 강우량을 관측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1658년부터, 영국에서는 1677년부터 관측했다. 조선에서는 이미 1442년 5월부터 측우기로 우량을 측정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보다도 약 200년이 앞선다.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측우기는 위와 아래 지름이 똑같은 원통형으로 제작돼 어느 방향으로 빗물이 들어와도 동일한 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각 지방의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해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이를 농사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측우기는 한글, 금속활자, 거북선과 같은 국민의 지식확장에 도움을 준다거나, 나라를 구하는 문화적 발명품은 아니지만 농경사회였던 조선 시대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는 생활형 발명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대표적 왕으로 칭송받는다. 측우기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세계 최초라는 역사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측우기 반포일을 법정기념일인 발명의 날로 제정하게 됐다.

[금탑산업훈장]

차별화된 소재기술 및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

LG 화학 기술연구원장인 유진녕 부사장이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용 전지 및 3D TV 핵심소재인 FPR(편광필름패턴) 개발 공로로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LG화학은 2011년 4월 오창 테크노파크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준공해 양산체제를 갖추으로써 우리나라가 미래 자동차 기술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유진녕 부사장은 “세계적인 화학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확보가 관건”이라면서 “LG화학이 전기자동차용 전지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소재기술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전지를 이용한 자동차용 전지를 개발해 녹색성장산업인 그린카와 2차 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전기자동차용 전지 개발은 그동안 미미했던 배터리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의 국산화율을 2010년 기준 약 45%로 대폭 향상시켜 소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FPR 개발로 대한민국 3D TV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사업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경영체계를 확립했다.

30년 동안 근무하며 LG화학을 세계적 회사로 성장시킨 유진녕 부사장은 “세계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식재산은 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를 선점하고 설계하는 특허경영을 통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특허경영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진녕
(주)LG화학 부사장(기술연구원장)

[은탑산업훈장]

고기능성 가공인삼 제품, 독자기술로 개발

(주)진생사이언스 김복득 대표는 세계 최초로 고기능성 가공인삼 제품을 독자기술로 개발하고, 인삼에서 유래된 고기능성 식품을 발견·개발한 공로로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인삼의 성분과 약효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약효성분이 강화된 가공인삼 제품인 '선삼'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천연물 의약품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290건 이상의 국내외 지적소유권을 보유, 국제 천연물 식약품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삼은 삼국시대부터 1,500년 동안 국가 주요 수출품이었음에도 전통적인 가공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제품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한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약대 내에 연구소를 설립, 인삼의약품 연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인삼연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수차례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개발된 인삼유래 고기능성 신물질들은 항산화 및 노화방지, 항암, 항치매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면서 “새로운 인삼 및 천연물소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식품과 항암제, 항치매제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 식약품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인삼 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지원사업과 후학양성을 통해 21세기 국가과학기술문화 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인삼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세계 천연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복득
(주)진생사이언스 대표이사

국내 최초 LCD 디스펜서 장비 개발, 핵심부품 국산화 기여

국내 최초로 LCD 디스펜서 장비를 개발해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류도현 (주)탑엔지니어링 대표가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주)탑엔지니어링은 2009년 LCD용 디스펜서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해, 세계일류상품 등록 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도 초 탑엔지니어링은 LCD 핵심공정장비인 디스펜서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선두기업인 일본의 H사로부터 특허분쟁에 휘말린 뒤 특허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2005년 특허전담조직을 신설해 특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다. 그 결과 국내 다(多)특허 보유 기업 88위를 차지하며 특허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변모하게 됐다.

류도현 대표는 “특허분쟁을 경험하며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성장에도 일조하며 가치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인력을 단순한 발명자가 아닌 특허 엔지니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특허 시스템 속에서 ‘Global TOP 5 IT 장비 메이커’라는 회사의 비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도현
(주)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특허 발굴 · 관리를 통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

“이렇게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부관계자와 포스코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 및 선·후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국가산업발전과 포스코의 기술개발에 더욱더 정진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한 포스코 박성호 상무는 수상소감을 포스코 임직원의 몫으로 돌렸다.

박 상무는 입사 이래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 분야에서 29년간 근무하며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또 반도체 실리콘 절단용 초극세선 소재를 자체 개발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최고급용 선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익성과 제품개발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박 상무는 포스코 내부의 특허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공정 및 기술별 전담변리사 제도를 운영하여 특허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특허에 구속되지 않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신규개발 제

품의 특허지도를 사전에 만들고 있다. 또한 공백기술을 찾아 개발함으로써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고 막대한 로열티 유출도 예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의 발굴, 관리, 분쟁 대응의 총괄자로서 특허를 통해 경영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강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 상무는 “앞으로는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아래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면서 “연구 착수 전에 원천 핵심특허 등으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성 호
(주)포스코 상무

55인치 OLED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 최초 개발

OLED TV용 55인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OLED 시장을 선점한 공로로 LG디스플레이(주) 안병철 전무가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안병철 전무는 OLED 사업의 초석이 되는 핵심 기술 및 차별화 기술개발에 매진해 고해상도 화소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국내 LCD 산업이 태동하던 1980년 후반부터 LCD 기술 연구 개발에 종사해 LCD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다수 개발해 LED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병철 전무는 “LCD가 본격적인 기술 성숙기에 접어든 2000년대 중반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면서 “선행기술개발 책임자로서 구성원을 ‘발명 3인조’로 구성하고 특히 발명 활동을 전개시킨 결과, 많은 우수특허를 출원하며 OLED 개발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이 산업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고 기초연구 단계에서부터 원천 특허를 많이 발명,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육성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연 공동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병 철
LG디스플레이(주) 전무

[올해의 발명왕]

쏘나타/K5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

2000년 초, 도요타 하이브리드에 필적할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무했다. 이 아성에 도전해 독창적인 구조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허를 개발한 현대자동차 환경차 구동설계팀의 김연호 팀 리더가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위해서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허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김연호 팀 리더는 이를 깨고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모터 자동변속기 일체형 구조를 연구, 전기차 구동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개발해 녹색기술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기준으로 7,9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 사용에 비해 약 5,000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나타났다. 또 2015년까지 약 10조, 5천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소의 모터 용량(30kW)으로 2011년 2월 양산시점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비(21km/L, 공인연비 기준) 및 동력성능을 달성했다.

김연호 팀 리더는 “개발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 시스템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라는 자긍심 하나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연비와 동력성능을 가지는 기술 개발을 통해 세상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의 환경차로 녹색 환경을 구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연 호
현대자동차(주) 파트장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벗짚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벗짚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11건
- ◎ 실용신안: 벗짚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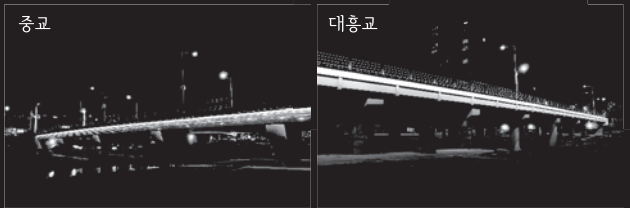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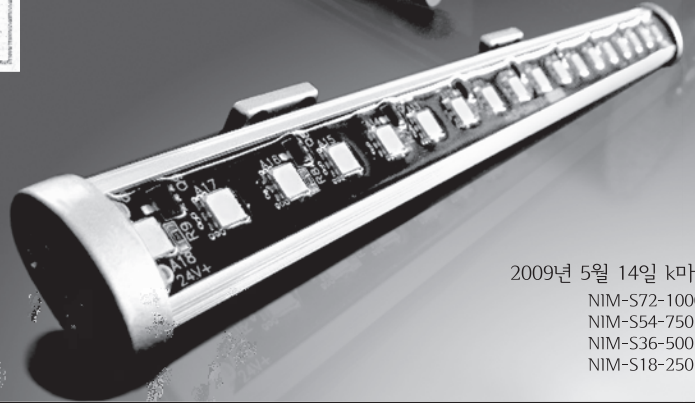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GD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 LED 조명등(NIM-CS1.5W-A)
-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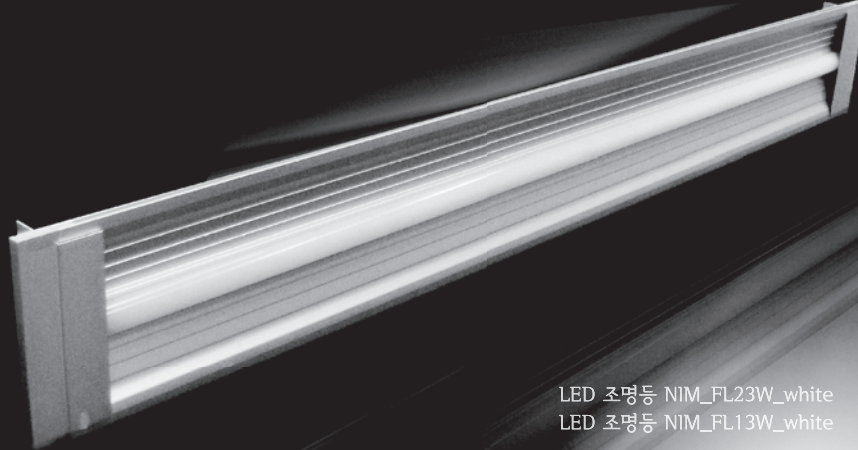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ECO FRIENDLY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www.nuriplan.com

(137-84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누리플랜 B/D
TEL) 02,2679,4100 FAX) 02,3660,4276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12년도 산업재산권 판례 평석 공모 요강

■ 추진 목적

-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특허청 내부 및 외부의 의견 청취
-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 공모과제 및 공모기간

[아래 자유과제 또는 지정과제 중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며 중복 응모도 가능]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청에서 지정한 과제(아래 2건)
 - ① 2010허1718 : 상표법제7조제1항제2호의 적용요건 -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② 2010다95390 : 침해소송 중의 권리무효 항변에 대한 진보성 판단
- 공모기간 : 2012. 4. 23. ~ 2012. 7. 31

■ 응모자격

-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 특허청 직원

■ 심의 절차

1차 평가
(A~C 3개 등급 구분)



2차 평가
(A급만 구체적 평가)



특허청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판례평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지식경제부장관상, 상금 50만원
- 우수상(2명) : 특허청장상, 상금 각 30만원
- 장려상(3명) : 특허청장상, 상금 각 20만원
-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
- ※ 우수상 1편과 장려상 1편은 특허청 내부 응모작에 우선 배정

■ 제출서류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부. 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면제
-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증, 로스쿨 재학생은 재학 증명서,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 판례 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부
- 판례 평석(별지 제3호 서식 및 아래 작성요령 참조) 1부
- ※ 필요한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http://www.kipo.go.kr/ipt/intro/intro03.html>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공고 / 고시 / 공지에서 다운로드

■ 서류 접수 및 문의

- 접수마감 : 2012. 7. 31(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이메일 주소 : jino@kipo.go.kr)
- 문의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배진호 사무관, 042-481-8426)

■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돌아감
- 응모된 판례 평석은 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자격이 다르거나,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는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함
- 시상기준에 맞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지식재산캠퍼스 6월 교육일정 안내

교육일정



지식재산번역(한·중)

일정: 6/13(수) ~ 6/15(금)

-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중국 지식재산권법 기초 및 한·중 지식재산 번역 능력 함양 과정

▶ 환급 및 지원

55만원 (48만원)

환급 및 지원

노동부 약15% 환급
중소기업 : 특허청 80% 지원
중소기업 외 : 특허청 60% 지원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OA)

일정: 6/20(수) ~ 6/22(금)

- 미국특허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인 이해를 통한 미국 특허출원 방법 및 Office Action 대응 전략 교육

▶ 환급 및 지원

55만원 (48만원)

환급 및 지원

노동부 약15% 환급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실무

일정: 6/26(화)

- 영업비밀의 요건, 침해행위 유형 파악을 통한 영업비밀 관리 실무
- 사례로 배우는 부정경쟁방지법률의 이해

▶ 환급 및 지원

18만원 (15만원)

환급 및 지원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일정: 6/28(목)

-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의 단계별 준비 절차 및 변론 능력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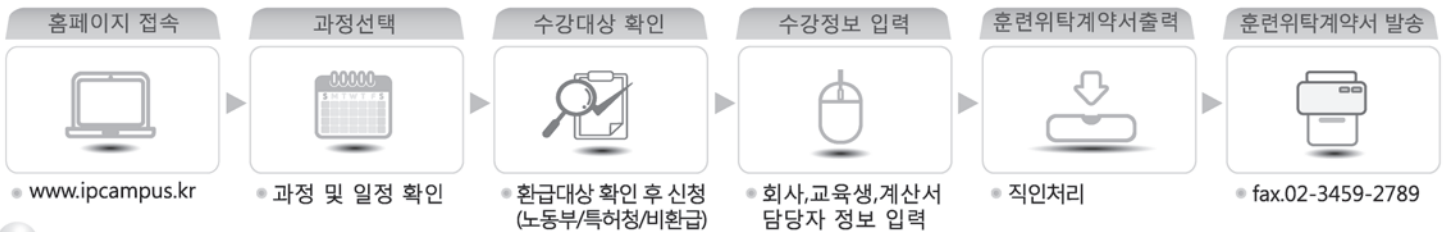
▶ 환급 및 지원

18만원 (15만원)

환급 및 지원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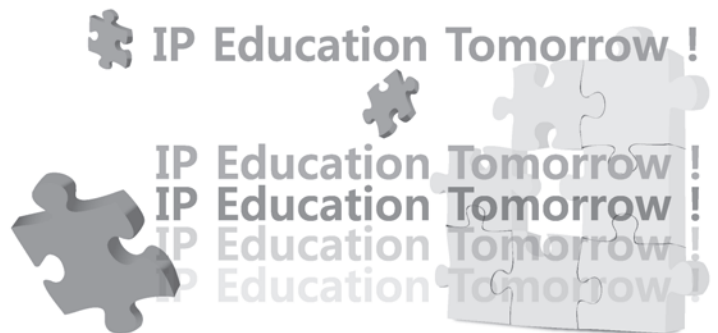
수강신청 방법



교육비 환급방법

노동부 노동부 교육비 환급 대상: 고용보험가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약20% 대기업 약15% 환급 예상
특허청 특허청 교육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교육비의 80% 환급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 제외)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사인사 확인 및 노동부 중복 환급 적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 지식재산캠퍼스 연간 교육일정

▶ 지재권 일반과정

✳ 특허청 80%지원, 노동부 약 15%환급

NO	일자	강좌명
1	02.08 ~ 02.10	지식재산권 기초 1기
2	02.15 ~ 02.17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1기
3	02.22 ~ 02.24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1기
4	03.14 ~ 03.16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5	03.21 ~ 03.23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6	03.28 ~ 03.30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7	04.04 ~ 04.0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8	04.25 ~ 04.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1기
9	05.09 ~ 05.11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0	05.23 ~ 05.25	중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11	06.05 ~ 06.08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2기
12	06.13 ~ 06.15	지식재산 번역(한-중)
13	06.20 ~ 06.2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OA)
14	08.22 ~ 08.24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5	08.29 ~ 08.3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6	09.05 ~ 09.07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9.12 ~ 09.14	지식재산 번역(한-미) 2기
18	09.19 ~ 09.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19	09.26 ~ 09.28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0	10.10 ~ 10.12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21	10.24 ~ 10.26	유럽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22	10.31 ~ 11.0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분쟁소송)
23	11.07 ~ 11.09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24	11.14 ~ 11.16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지재권 특별과정

✳ 특허청 80%지원

NO	일자	강좌명
1	02.28	한-미,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	04.17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3	04.19	Patent Troll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4	05.03	특허침해 감청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5	05.29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6	06.26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7	06.28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8	09.25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9	10.0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 관리전략
10	10.05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1	10.17	심사관과 함께하는 명세서 클리닉
12	11.22	올해의 판례동향_특허, 디자인
13	11.23	올해의 판례동향_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 지재권 국제과정

NO	일자	강좌명
1	03.08 ~ 05.22	PADIAS* (해외강사 국내초청 강의)
2	7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 EUROPE (해외연수)
3	8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 USA (해외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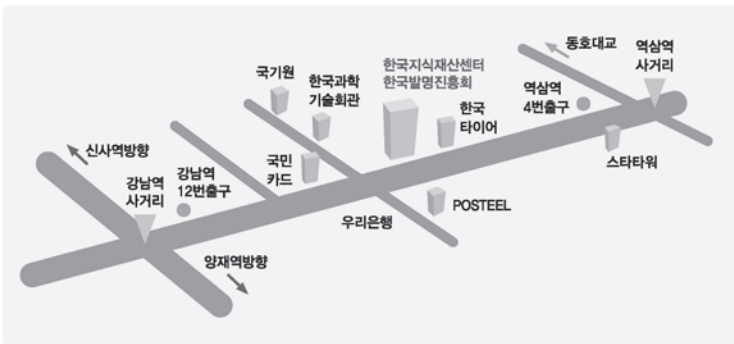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중소기업 대상):교육비의 80% 환급
- 특허청 예산 소진시 교육비 지원 조기마감 가능
- 환급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오시는 길

교육장 안내



▲ 제1교육장 ▲ 제2교육장 ▲ 교육생 휴게실

미국 법률제도 및 특허법 기초

Introduction to US Legal System and US Patents

○ 프로그램 개요

- 일 시 : 2012년 06월 27일(수)~ 06월 29일(금)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 1교육장
- 교육 대상
 - 기업 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미국특허 관련업무 종사자
 - 미국 특허출원 및 소송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 교육 인원 : 3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교육비 : 35만원 (중식제공)
- 교육비 지원 및 할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교육비의 80% 지원(*70,000원만 선납부)
 * 조기 신청자(6월 15일까지 등록자),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교육비 50% 할인 (*170,000원만 선납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할인 적용 불가

○ 프로그램 특징

- 미국 법률제도 및 특허법(출원,소송)에 대하여 이론뿐 아니라 사례 및 실무중심으로 강의운영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통한 해외 특허 실무경험 공유
- 강의는 우리말과 영어를 병행하고, 영어 강의시 한국어로 Q&A 및 요점정리를 통한 내용 이해 도모

○ 프로그램 일정

일 정	시 간	교육내용
6/27(수)	09:30-09:50	Overview of the Program
	09:50-10:30	Overview of the US Legal System
	10:30-10:50	Q/A-Break
	10:50-12:00	Basic U.S. Patent Law and Practice
	12:00-13:10	Lunch
	13:10-14:20	Overview of IP Rights/Relief-Different Types for Each
	14:20-14:40	Q/A-Break
	14:40-15:50	Patent (Utility & Design)
6/28(목)	15:50-16:10	Q/A
	09:30-10:40	Overview of Patent Prosecution/USPTO Structure
	10:40-11:00	Q/A-Break
	11:00-12:00	Parts of a Patent Application
	12:00-13:10	Lunch
	13:10-14:10	Applications and Related Topics
	14:10-14:30	Q/A-Break
	14:30-15:40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6/29(금)	15:40-16:00	Q/A
	09:30-10:30	Reexamination
	10:30-10:50	Q/A-Break
	10:50-12:00	Introduction to US Patent Litigation
	12:00-13:10	Lunch
	13:10-14:20	US Statute on Patent Infringement I
	14:20-14:40	Q/A-Break
	14:40-15:50	US Statute on Patent Infringement II
	15:50-16:30	Q/A-Break or Quiz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2.05.29(화) ~ 06.22(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pid@kipa.org) 또는 FAX(02-3459-2859)접수
 - * 신청 후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el: 02-3459-2815, 2806)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광고 참조

2012년 발명교육 우수사례 수기 공모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을 통하여 개인 또는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킨 우수 사례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발명교육의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응모대상

- 발명교육을 받아본 경험 혹은 발명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례자 또는 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공모기간 : 2012. 6. 1(금) ~ 7. 31(화) 24:00

■ 공모내용 : 발명교육을 통해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이 계발된 사례

- 발명교육 체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계발된 학생의 사례
 - * 발명교실, 발명대회 등을 통해 계발된 역량이 성격 변화, 장애극복, 학업성취도 향상, 진학 및 창업 성공 등으로 연계된 사례
- 발명을 통한 학생의 변화를 체험한 발명교육 지도경험을 가진 교사의 사례
 - * 우리 학교·동아리 단위로 참가한 유수의 발명대회 수상 과정을 통한 성취 사례 등
- 학창시절의 발명교육을 기반으로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해나가는 사회인의 사례
 - * 특허 등 다양한 지재권을 보유한 직장인, 발명 연계 사업 창업자, 기술이전 사례, 발명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 연구 논문을 작성한 사례 등
 - ※ 발명교실, 발명대회 등의 발명교육과 연관된 경험을 통한 변화사례 위주 선발 예정

■ 공모방법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발명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www.ip-edu.net)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 발명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나눔터] 내 발명교육 우수사례집 증보판 '발명은 나의 힘' PDF파일 참고바람

■ 선정자특전

- 사례 선정자(응모자) 대상 소정의 상품 제공 예정
 - * 심사회의 결과, 목적에 부합하는 원고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의 주최·주관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예정
 - * 지역 발명인재육성협의회 평가 시 가점, (학생)발명장학생 지원 시 가점, (교원) 발명교육대상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 발명교육교수·학습지원센터(www.ip-edu.net)를 통해 선정 사례 확산
 - * 추후 필요 시 발명교육 우수사례집 출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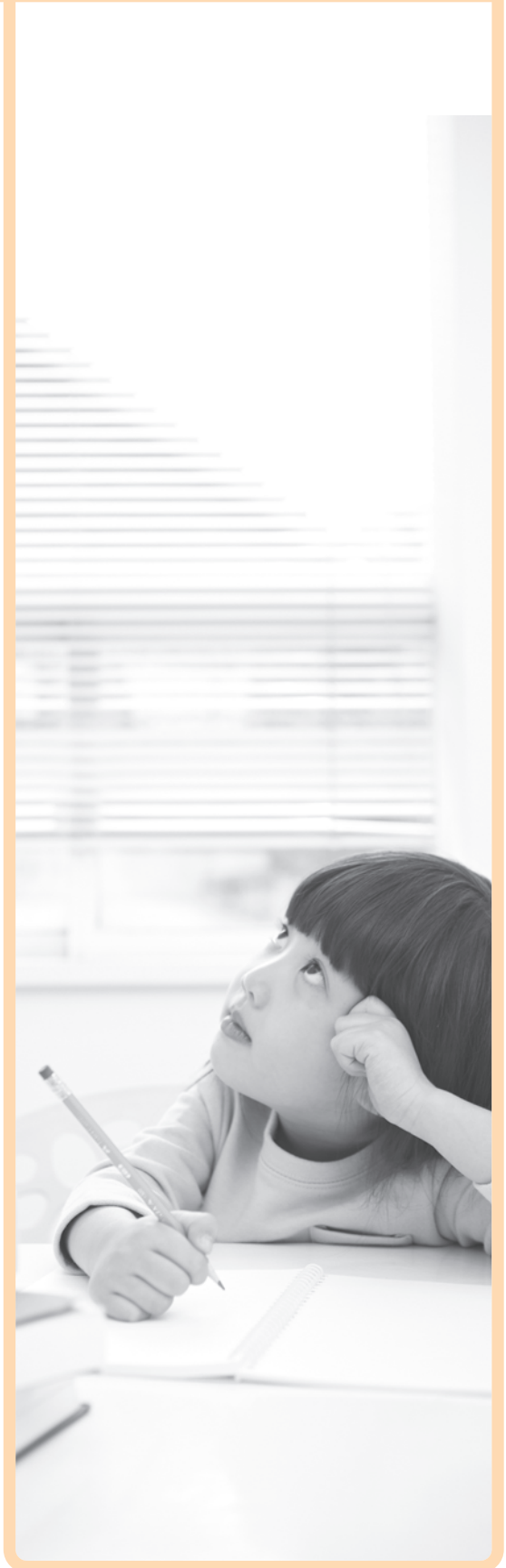
■ 결과발표

- 2012. 8. 22(수), 개별연락 및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주최 / 주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접수 및 문의

-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접수(sjkim@kipa.org)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발명교육 우수사례 수기 공모 담당자 (02-3459-2718)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T3)」 운영계획 공고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2012년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목 적

-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 인력인 대학 교수의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 중장기적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강의 기반 구축

■ 주요내용

대상	과정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기본	찾아가는 과정	지식재산권 전반적 내용 4월 ~ 6월	국내·외 지식재산 제도, 특허명세서, 특허정보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사업화 방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상반기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권 기본 4. 16 ~ 4.18	창의적 연구개발 기법(Triz) 및 지식재산권(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기본
		디자인·상표·저작권 4. 18 ~ 4. 20	디자인보호법(디자인요건, 특수디자인, 보호 및 활용), 상표법(상표요건, 상표권의 보호 및 활용), 저작권(저작권법 개요, 저작권의 보호 및 활용 등) 개요
중급	여름 단기집중 과정	특허정보조사·분석 8. 6 ~ 8. 8	특허검색 DB 소개 및 활용 방법, 특허기술 검색시 작성 노하우, 특허 data 가공방법 및 특허 분석 방법 (개인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강한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8. 8 ~ 8. 10	특허요건, 명세서의 개요, 특허 청구범위 작성 및 분석, 주요 거절 이유 소개 및 대응방법 (개인프로젝트: 특허 청구범위 작성)
	하반기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 사례 연구 10. 22 ~ 10. 24	전공 분야별(기계,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지식재산 사례 소개 및 학습 (개인 프로젝트: 사례 연구 및 의견 제시)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라이선싱 10. 24 ~ 10. 26	특허기술 가치평가 방법 소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팀프로젝트: 전공 분야별 특허기술 가치평가)
고급	겨울 단기집중 과정	지식재산 마스터 과정 12. 11 ~ 12. 14	지식재산 콘텐츠 개발, 교수법 소개 (개인 프로젝트: 한학기 분량 강의안 제작)
	해외 심화과정	IP for Professors 7. 15 ~ 7. 26	교수들이 알아야할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소개 및 해외 우수 IP 기관 방문
특별 (별도공고)	학회 프로그램 운영 (연중, 10개 학회)		학회 맞춤형 지식재산 세션 운영 (학회,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설계)
	지식재산 특강 운영 (연중, 3개 내외 대학)		대학 교수, 연구원, 산학협력단 직원 등 지식재산 관련자 대상 세미나 운영

* 상기 교육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원, 장소 등은 각 과정 시작 1개월 전 공지

■ 교육방법

- 찾아가는 과정 : 대학 방문 교육(4학교 선정, 1주~8주 강의)
- 단기집중 과정 : 주제·단계별로 특화된 집합 교육 프로그램(과정별 2일~5일)
- 해외심화 과정 : 해외 우수기관 연수기회 제공
- 학회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 : 별도공고 예정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각 과정 시작 1개월 전 홈페이지 공고(www.kipa.org / www.iphuman.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iphuman.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문 의 :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T. 02-3459-2808, 2813)



[해외연수] 지식재산 실크로드 Europe

□ 교육개요

목적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EU대사관 연계를 통해 지재권 전문가들의 강의 및 토론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지재권 현장 지식 습득 - 해외 우수 IP 관리기업(관)의 지재권 관리시스템 및 관련 현황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습득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상	- 기업의 특허관리 책임자 및 실무자 - 대학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등 특허기술 이전 관련 종사자 - 변리사 및 특허사무요원 등
장소	- 스위스(3곳), 벨기에(3곳), 프랑스(2곳)
기간	- 2012. 6. 27(수) ~ 7. 6(금) (8박 10일)
비용	- 6,300,000원 * 현지교육비,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일체 - 단체할인 : 5인 이상 참가 기업(단체) 10% 할인
인원	- 정원 : 30명

□ 연수 프로그램

Phase I 기관 방문교육 실시	- WIPO 'One day training Course' 교육실시 - EU대사관 'European Patent Law' 교육실시
Phase II 필드리서치 실시	- 스위스 : 노바티스, 지멘스 방문 - 벨기에 : 유럽집행위, 비즈니스 유럽 방문 - 프랑스 : 프랑스텔레콤, 루이비통 방문
Phase III 현지 문화 체험 및 네트워크 구축	-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문화 체험 -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교류 - 연수단 사후교류

□ 참가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ipcampus.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교육신청서 송부 (fax : 02-3459-2789)
대상	-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 yongil@kipa.org, 02-3459-2767

□ 세부 연수프로그램

일자	국가	주요일정		비고	
6.27(수)	-	인천 → 제네바		항공	
6.28(목)	교육	10:00~12:00	WIPO 교육 - Integrating Business and IP Strategy	-	
		12:00~14:00	중식		
		14:00~16:00	WIPO 교육 - Using the PCT as a Strategic Tool for Business Success		
6.29(금)	스위스	필드리서치	10:00~12:00	노바티스 - 노바티스 지재권 관리 현황 및 전략	전용차
			12:00~14:00	중식 및 이동	
			14:00~16:00	지멘스 - 지멘스 지재권 관리 현황 및 전략	
6.30(토)	문화탐방	10:00~12:00	현지 문화탐방	-	
		12:00~14:00	중식	-	
		14:00~16:00	이동	항공	
7.1(일)	문화탐방	10:00~12:00	현지 문화탐방	-	
		12:00~14:00	중식	-	
		14:00~16:00	현지 문화탐방	-	
7.2(월)	벨기에	교육	10:00~12:00	EU 대사관 교육 - 'European Patent Law' 개정방안	-
			12:00~14:00	중식	
			14:00~16:00	EU 대사관 교육 - 한-EU FTA에 따른 개정사항 및 IP 전략	
7.3(화)	벨기에	필드리서치	10:00~12:00	유럽집행위원회 - 유럽 단일특허제도 출범과 그영향	전용차
			12:00~14:00	이동 및 중식	
			14:00~16:00	비즈니스 유럽 - 유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16:00~20:00	이동	
7.4(수)	프랑스	필드리서치	10:00~12:00	루이비통 - 루이비통 지재권 관리 현황 및 전략(전용차)	전용차
			12:00~14:00	이동 및 중식	
			14:00~16:00	프랑스텔레콤 - 프랑스텔레콤 지재권 관리 현황 및 전략	
7.5(목)	-	파리 → 인천		항공	
7.6(금)	한국	인천도착 및 해산		-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세계적 IP교육 선도기관, IP캠퍼스!



대학창의발명대회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추진목적

대학 사회에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양성, 우수 졸업 작품 등 대학(원)생 연구성과의 권리화·사업화 지원

참가자격

국내 대학(교)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구분	참가방법	지도교수	기타
발명연구부문	팀(2~3명)	필수	※ Post Doc 제외
발명특허부문	팀(2~3명)또는 개인		※ Post Doc 참가 가능
발명공모부문			

경진부문

발명연구부문(신청기간 : 4.5~5.22, 발명제안서 제출)

- 아이디어를 발명제안 형식으로 제출한 후 교육과 연구를 거쳐 발명으로 완성하는 부문

* 1차 선발 180팀 발명교육, 2차선발 60팀은 시작품 제작 등을 위한 발명연구비(150만원 한도) 지원

발명특허부문(신청기간 : 8.2~9.13, 발명신고서 제출)

- 교내활동(졸업작품·논문, 개인발명 등)을 통하여 완성된 발명을 특허출원서 형식으로 제출한 후 우수한 발명을 선정하는 부문

* 심사 후 선정된 40개 팀 시작품 제작비(80만원 한도) 지원

발명공모부문 (신청기간 : 8.2~9.13, 과제해결서 제출)

- 공모기업이 출제하는 발명과제를 해결하는 부문
- 공모과제

중앙방수기업 : 기존 방수공사 관련 특허의 기능개선 또는 신제품, 신공법 개발 아이디어

한경희 생활과학 : 대기업을 백색가전을 제외한 생활가전과 이미용가전의 새로운 기능 또는 신제품 아이디어

LS산전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량시스템

* 심사 후 선정된 20개 팀은 시작품 제작비 지원(80만원 한도)

경진부문 모두 기업체 지원에 의한 성과물은 제외

경진부문 복수신청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시상내역(총상금 1억3천5백만원)

- ▶ 학생부문 : 국무총리상등 1억 5백만원
- ▶ 지도교수부문 : 과총회장상 1천 6백만원
- ▶ 발명동아리부문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등 1천 4백만원

수상자특전

- ▶ 발명연구부문 1차 통과작 무료발명특허교육 2박 3일(6월말,예정)
- ▶ 우수상 이상 수상작 국내출원비 지원
- ▶ 대상수상발명 국제발명전시회 출품지원

대회홈페이지 : www.inventkorea.org

문의 : 02-3459-2798, 02-3459-2794

idea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특허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MKE 지식경제부 대한금속재료학회 KSMI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KCS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화학공업협회 KOVA (사)벤처기업협회

협찬 : HUROM SLOW JUICER 중앙방수기업주식회사 HAAN LS산전



twitter.com/inventkorea



Column

날개 없는 선풍기 다이슨, 드디어 특허전쟁을 위한 칼을 뽑다

삼성 - 애플, 그 끝나지 않는 전쟁

라이벌 업체의 복잡 미묘한 상표 이야기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Column

날개 없는 선풍기 디자인, 드디어 특허전쟁을 위한 칼을 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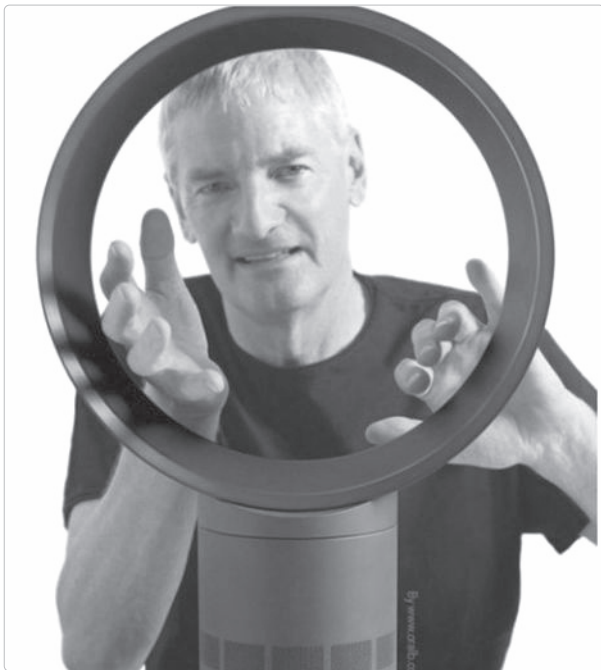
날개 없는 선풍기. 2011년 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트위터에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현재까지도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선풍기이다. 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선풍기는 날개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파괴해버린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날개가 없는데도 바람이 나온다니 참으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날개가 없어서 매우 안전하고, 그 디자인 또한 정말 멋지고 혁신적이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발명품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혁신적인 발명품이니 당연히 특허와 관련된 문제인데, 최초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 원조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회사들에 대하여 특허 침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워낙 제품 자체가 혁신적이고 기발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모조품이 나왔던 터라 이러한 분쟁은 사실 처음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원조회사 제품의 가격과 모방제품의 가격 차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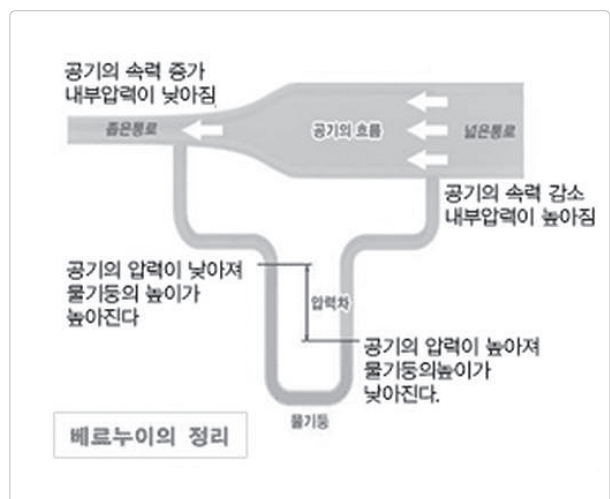
매우 컸기 때문에 원조회사의 시장 잠식도 매우 큰 편이었다. 그렇다면 날개 없는 선풍기와 관련된 싸움은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아래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조는 바로 영국의 다이슨(Dyson)사이다. 다이슨은 영국의 디자이너 제임스 다이슨이 설립한 가전회사이다. 제임스 다이슨은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과 열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인데, '날개 없는 선풍기'와 더불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는 그의 대표적인 혁신적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5126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5127번째에서야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결실을 이루어내는 그의 끈기와 열정을 잘 말해준다. 현재 다이슨은 영국을 뛰어 넘어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가전 제품을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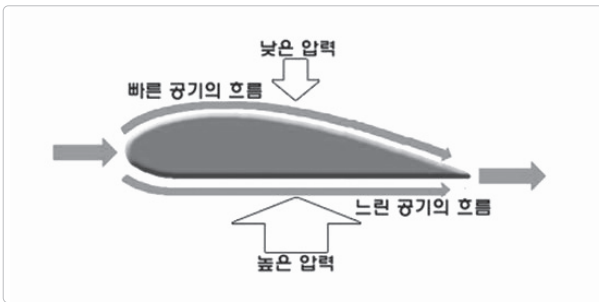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는 바로 유체역학의 핵심 원리인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것이다. 베르누이 정리는 1738년에 베르누이가 발표한 것으로, 점성과 압축성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르는 경우에 대해 속력과 압력, 높이의 관계를 정의한 법칙이다. 즉, 유체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굵기가 변하는 관에 공기를 흐르게 하고 굵기가 다른 부분의 아래로 가는 유리관을 연결하고, 가는 유리관 속에서의 물의 높이를 관찰하면 굵은 쪽에 연결된 물기둥은 그 높이가 낮아지고, 가는 쪽에 연결된 물기둥은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 즉, 같은 높이에서 유체가 흐르는 경우 유체의 속력은 좁은 통로를 흐를 때 증가하고 넓은 통로를 흐를 때 감소하게 된다. 이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유체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고, 반대로 속력이 감소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유리관 속의 물기둥을 더 세게 누르므로 물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유리관 속의 물기둥을 약하게 누르므로 물기둥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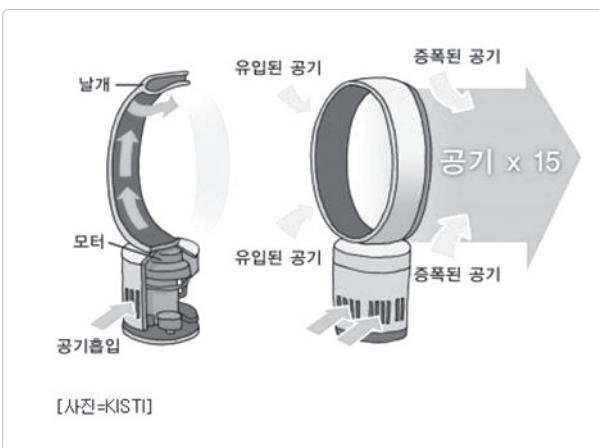


비행기의 날개도 같은 원리이다. 비행기 날개를 살펴

보면 앞부분의 상단이 더 둥글고 높게 되어있고 아래 부분은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공기를 정면에서 맞는 부분이 둥글고 높게 되어있어 빠른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날개 뒷부분은 낮은 압력이 형성되고 아랫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형성되어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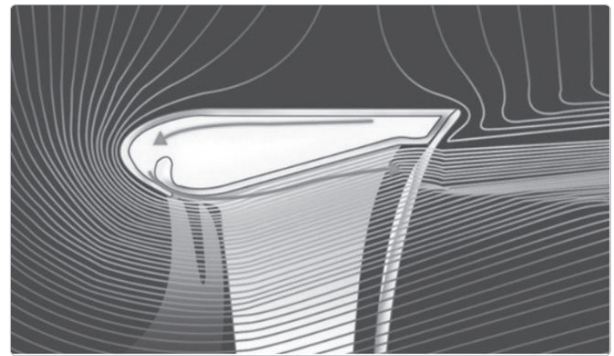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하단의 본체부에 장착된 모터의 동작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한다. 이 흡입된 공기는 상단의 원형의 날개 내부로 들어가 회전하게 되는데, 이 원형의 날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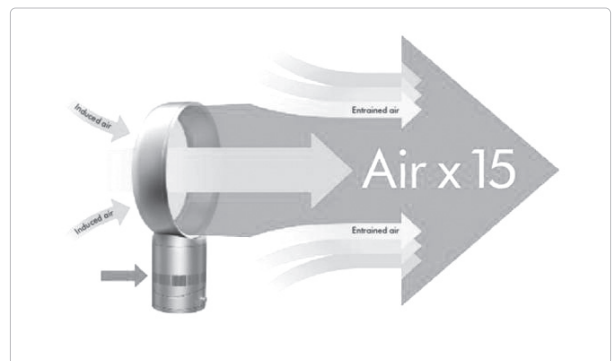


즉, 아래 그림과 같이 날개의 단면을 보면 비행기 날개 모양의 단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터에 의하여 날

개 내부로 유입된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좁은 개구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좁은 개구부를 통하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진 공기가 비행기 날개 모양의 원형 날개 표면을 타고 나가면서 낮은 압력을 형성하여 원형 날개 뒷부분에 있던 주변공기를 빨아들여 강한 전진 기류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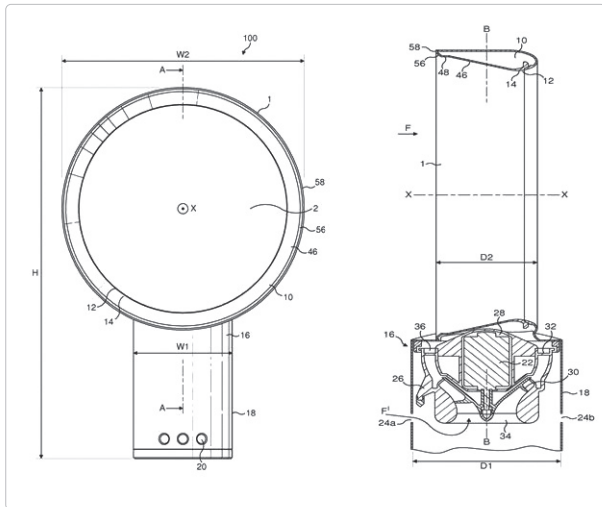


다이슨 사에 의하면, 흡입된 공기의 15배 정도 많은 풍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종래 기존 방식의 선풍기의 경우 날개가 공기를 자르면서 바람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진동이 있는 바람이 발생하는 일종의 버퍼링 현상이 있었으나, 날개 없는 선풍기의 경우 진동이 없는 직진성과 안정성을 갖는 기류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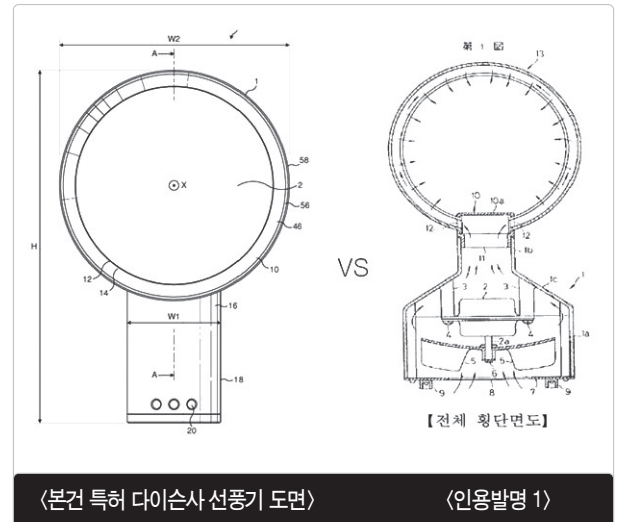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이슨의 선풍기를 모방한 업체들은 다이슨의 특허 권리범위를 피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된다.



한편, 위 특허 제10-1038000에 대하여는 2건의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1건의 무효심판이 제기되었다. 그 중 무효심판은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와 유사한 선풍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것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다이슨의 특허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이슨의 특허들을 무효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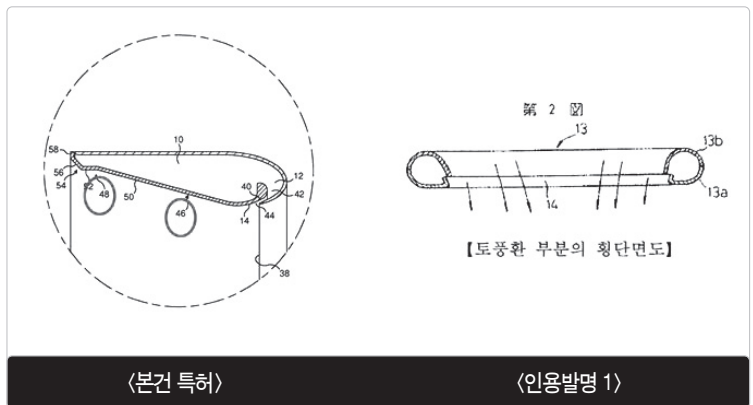
이 무효심판에서는 여러 특허 요건 중, 진보성(특허법 제29조제2항)의 무효사유가 쟁점이 되었으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인용발명 1(일본 공개특허공보 소화 56-167897호)과 인용발명 2(Ruce R. Munson의 2인이 저술한 유체역학)을 선행기술로 제시하여 본건 특허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하였다.

실제 무효심판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은 다이슨의 특허 청구항1의 구성들 중 구성 1부터 구성 4까지는 인용발명1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구성 5는 베르누이 정리를 설명한 인용발명 2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심판부는 구성 1부터 구성 4까지 인용발명 1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구성 5는 인용발명 2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세하게는, 다이슨 특허의 테이퍼가 진 디퓨저부(46)에 의해 마우스부(12)를 통과하는 공기 유동에 난류 및 와류 발생이 방지되고 디퓨저부(46)의 하류부 에 각을 이루며 위치된 가이드부(48)에 의해 공기 유동이 사용자 쪽으로 집중되는데 반해, 인용발명 1에는 슬릿(14, 본건 특허의 마우스부에 대응)을 따라 공기가 배



출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배출된 공기의 난류 및 와류를 방지하기 위한 디퓨저부 및 사용자쪽으로 공기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부에 대한 구성은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심판부는 구성 5는 노즐 선단(마우스부)에 연이어 설치되며 슬릿으로부터 고속으로 배출되는 공기의 속도를 늦추어 유동을 안정화시키는 디퓨저부와 사용자 측으로 바람을 집중시켜주는 가이드부에 관한 것에 대한 구성으로 인용발명 1에는 전혀 개시된 바 없으며, 인용발명 2에는 유체기계 설계의 기본 원리가 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설명한 것일 뿐 어떠한 부분이 구성 5에 대응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부력의 원리 그 자체로부터 선풍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형상이나 구조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듯이 유체기계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원리인 베르누이 방정식 자체로부터 유체기계의 일종인 선풍기를 구성하는 특정한 구조인 구성 5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이슨은 무효심판에서 승리하게 되어 다이슨의 특허는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었다. 본 심결은 2012년 1월에 나왔으며, 현재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결이 나온 후 2~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이슨이 국내의 10개 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다이슨 측에서는 무효심판에서의 승리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공격 태세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업체 중 코스텔이라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다이슨의 경고 행위가 영업방해이며, 다이슨의 특허는 공지기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마도 국내 업체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무효심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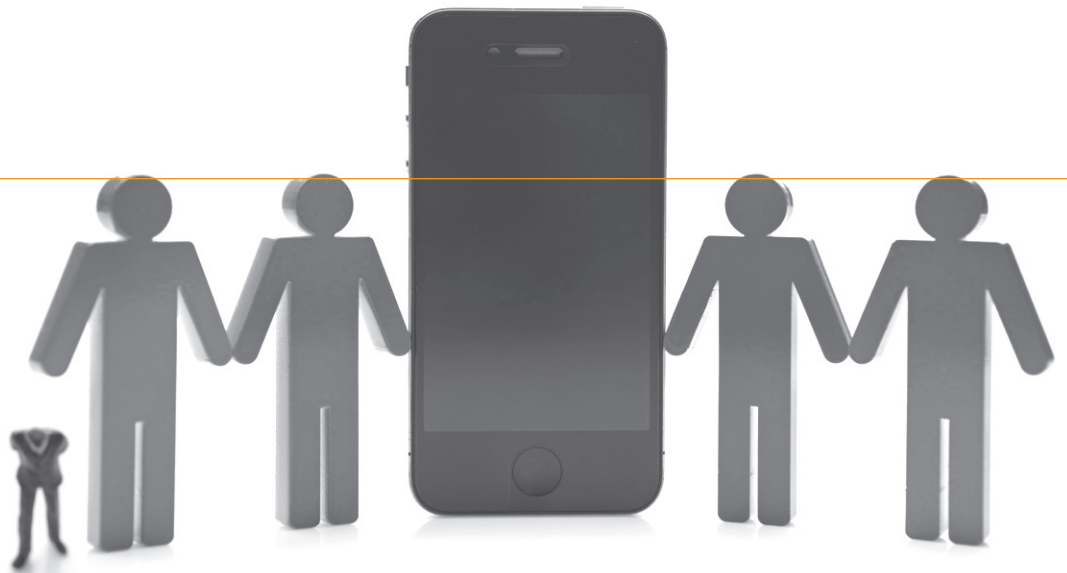
다이슨 특허의 권리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고 넓어서

결국 국내 업체들은 다이슨의 특허를 무효시키지 못하는 한 특허침해 책임을 벗어나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외관상 다이슨의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대로 다이슨의 제품을 모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이슨이 특허권이라는 칼날을 날카롭게 국내 업체들을 겨냥하여 새움으로써 새로운 특허 전쟁의 막이 올랐다. 국내 업체들도 현재까지는 다이슨의 일갈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태세이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만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2012. 6





VS

삼성-애플, 고 끝까지 이끄는 전쟁

30년 협력관계... 아이폰 출시 후 라이벌로



은 초 인기를 모았던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양명균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죽음을 택한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전쟁은 누가 먼저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다. 양 사는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30건이 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를 주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통신 관련 표준 특허로 맞서고 있다. 하늘 아래 하나의 태양으로 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삼성-애플 전쟁의 서막 = 삼성과 애플의 관계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속히 악화됐다. 사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8조 원이 넘는 부품을 구입한 최대 고객사다. 올해도 삼성전자로부터 11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규모의 부품을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라면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과 애플의 협력관계는 약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의 전 CEO 고 스티브잡스는 지난 198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삼성 창업주

인 고 이병철 회장을 만났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였다.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된 스티브 워즈니악의 새파란 젊은 사업가였다. 이병철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진 젊은이”라며 “앞으로 IBM과 대적할 만한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으로 떠오르면서 이건희 회장도 잡스와 몇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뒤를 이어 이재용 사장도 미국 애플 본사를 종종 방문했고 잡스가 아이폰 샘플을 직접 가져와 특징을 꼼꼼히 설명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지난 30년 협력관계가 경쟁관계로 바뀌기 시작했다. 스티브 잡스는 지난해 삼성 갤럭시탭을 향해 ‘도착 즉시 사망(DOA)’ 할 것, 삼성은 모방자(카피캣)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결국 애플은 지난해 4월 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삼성은 협력관계를 의식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했지만 일주일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공세로 전환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4월 21일 “애플사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자 회사가 아닌 회사들까지도 삼성에 대한 견제가 커지고 있다. 못이나오면 때리려하는 그런 원리”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패권을 잡아라 =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해서다.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공은 애플이 가져갔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

폰을 내놓으며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를 바꿔 버렸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 쇼크에 한국 안방시장까지 내주면서 비상이 걸렸다. 패스트팔로우어(빠른 추격자) 전략에 자만하며 기다리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기존 사업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폰 시장은 후발사업자들이 따라붙을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게 된 원동력은 아이러니하지만, 애플이다.

아이폰 쇼크 이후 이건희 회장은 ‘젊은 삼성’을 표방하며 인적 및 조직 재편을 서둘렀고,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도 임직원들에게 보낸 CEO메시지를 통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자”고 주문했다. 패스트팔로우어가 아닌 퍼스트무버 전략을 강조했다.

과거 화려한 명성을 떨쳤던 일본의 소니가 급격히 쇠락한 것이나, 애플의 아이폰이 기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사례를 반면교사를 삼겠다는 선제적 포석이었다. 이를 통해 애플을 따라잡은 것은 물론이고, 갤럭시노트라는 창조적 제품을 내놓으며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을 지켜야 하는 애플은 특허를 내세워 경쟁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옴니아 시절까지는 별 볼일 없는 상대였지만 갤럭시S와 갤럭시탭을 앞세워 애플 영역을 침범하면서 경쟁구도가 보다 분명해졌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집단과 집단의 대결로도 변모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은 광범위한 특허가 필요하며 운영체제(OS)를 갖고 있는 주요 업체들 모두 통신 기술이 취약하다. 때문에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바로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대결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애플과 특허전쟁을

별이는 삼성전자를 도울 뜻을 내비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LG경제연구원 손민선 책임연구원은 “이제 특허 소송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는 같은 생태계에 속한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같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아래 있는 HTC와 모토로라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이 IBM에서 특허를 사들이고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도 애플 등 경쟁기업의 특허 공세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전쟁 향후 전망은 =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치고 있는 특허전쟁은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승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잠금 해제 특허침해 소송 역시 원고패소를 결정했다. 두 소송 모두 이번 특허전의 분수령으로 생각했던 본안 소송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를 인정할 경우 상대방 제품을 판매 금지시킬 수 있다”며 “이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도 쉽게 특허침해 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세와 협상 분위기를 오가는 ‘밀고 당기기’도 치열하다. 결국 언젠가는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CEO)과 팀쿡 애플 CEO가 21~22일(현지시간) 이틀 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만났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신종균 사장도 함께했다. 1년 넘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수장이 처음으로 담판에 나서면서 향후 특허전 향배에 대해 전 세계 전자·IT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재판의 주심을 맡고 있는 루시 고 판사의 증재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 수장이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특허 분쟁이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삼성과 애플은 최대 협력사이기 때문이다.

양 사의 소송 비용은 4억 달러(약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스마트 기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LCD 등을 만드는 삼성과 이를 통해 완제품을 만드는 애플은 서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결국 한 쪽을 파국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성기 한국국제지적재산권협회 회장은 “양 사가 상당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다투고,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절대 강자라는 사실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소송을 계속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양측에 적절한 비즈니스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크로스라이선스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한 대외비로 하겠지만, 삼성과 애플 중 더 많은 상대방의 특허를 쓰는 쪽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양사 CEO가 만났다고 해서 바로 타협에 이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인 구글과 오라클도 지난해 9월 양사 CEO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무위로 끝났다. 지난해 끝난 노키아와 애플의 소송에서도 양측 CEO가 만났지만 아무런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CEO 회동을 계기로 결국엔 합의에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사의 소모전이 불필요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의의 기술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보유기술을 무기로 상대방의 발목만 잡으려 한다”는 글로벌 IT업계 내 비난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IT기업 특허법의 한 관계자는 “양사의 특허전이 진짜 상대방의 제품을 판매 금지시켜서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은 아닐 것”이라며 “결국 각각의 특허로 크로스라이센싱 협상에서 우선권을 갖기 위한 소송전인데, 최근 움직임을 봐서는 조만간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애플 특허전, 얻는 것도 있다 = 특허 전쟁은 돈의 전쟁이다. 삼성과 애플처럼 전 세계적으로 특허전을 벌일 경우 소송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얻는 인지도 상승 효과가 만만치 않다. 공짜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다는 얘기다. 애플과의 특허전으로 인해 각종 특허 공세에도 튼튼한 기업이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고, 삼성과 애플이라는 세기의 라이벌 구도를 완성해주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특허전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LG전자가 삼성전자에게 ‘한 판 붙자’라며 도발적으로 나선 것도 삼성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은 오히려 애플이 먼저 싸움을 걸면서 저절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고, 브

랜드 위상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은 이번 애플과의 특허전 이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1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조사에서 브랜드 가치가 23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0억 달러 이상을 끌어 올렸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도 지난해 애플을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을 적극 활용한 광고마케팅도 펼쳤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호주의 유력매체 ‘선헤럴드’에 ‘애플이 막으려 했던 태블릿’이라며 갤럭시탭 10.1을 소개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호주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 것인데, 애플과의 특허전을 역으로 이용한 셈이다.

삼성전자 호주 모바일 책임자인 타일러 맥기 사장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으로 갤럭시탭 10.1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져 이 태블릿은 이미 유명한 이름(house hold name)이 됐다”고 말했다.

높아진 브랜드 위상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전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광범위한 특허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파트너를 확장할 기회를 맞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은 애플에 견줄 유일한 기업을 삼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 6 |



송영록
이투데이 산업부 기자

라이벌 업체의 복잡 미묘한 상표 이야기

삼성전자와 애플,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캐논과 니콘, 농심과 삼양... 이들 업체 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오랫동안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며 서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라이벌 업체 간에는 제품, 서비스 면에서의 경쟁 구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간에도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로 얽혀 있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라이벌 업체 간에 실제로 상표권 분쟁이 생겼던 사례, 또는 향후 상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사례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삼성전자 vs 엘지전자 : 'OLED' 상표권은 누구에게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최근 'OLED TV' 라는 이름으로 TV를 출시하였다. 이들이 최신 개발한 TV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OLED'로서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자로서 'OLED TV'는 OLED 방식,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방식으로 화면을 구현하는 방식의 TV를 말한다. LG는 2011년 1월 11일자로 'OLED'를 영문 텍스트로만 출원하여 현재 공고 중인 상태로서 이에 대해 ~가 정보제공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¹⁾. LG전자는 영문 'OLED' 뿐



만 아니라 한글 ‘올레드’, ‘OLED 오엘이디’, ‘Nano OLED’, ‘Clear OLED’, ‘OLED(색채도형복합상표, 상기 우측 사진 참조)’, ‘Trans OLED’, ‘Flex OLED’ 등 시리즈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며 그 중 몇 건은 현재 공고 중이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OLED’에 대해 ‘Samsung OLED TV’라는 명칭으로 2011년 11월 14일자로 출원을 완료하였고 엘지전자보다 한 발 늦게 출원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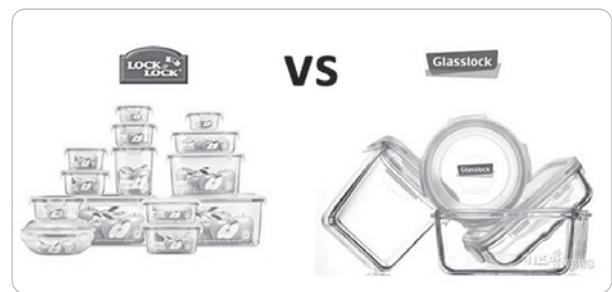
사실,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자로서 디스플레이 구현 기법의 일종으로서 TV 제품에 사용된 방법을 나타내는 말로서 식별력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는 삼성 측에서 2006년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권 확보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식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도 ‘AMOLED’ 상표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주요 국가에서는 거절결정되었다. ‘OLED’ 역시 ‘AMOLED’와 동일한 TV 화면 구현 기법의 하나를 약자로 표현한 것으로서 ‘AMOLED’와 같이 거절결정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문제는 ‘OLED’가 현재 일반수요자들에게 ‘AMOLED’와 같이 TV화면 구현기법의 하나로 직감되는지 여부이다. 만일, ‘OLED’ 방식이 일반수요자들에게 TV화면 기법의 하나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OLED’는 이제 LG 전자 고유의 상표로 되어 삼성전자로서는 TV 제품에 ‘OLED’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 ‘OLED’ 상표로 양사 간에 상표권 분쟁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최근 특허청이 LG전자의 ‘OLED’ 출원에 공고결정을 내리고, 현재 해당 출원에 정보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라이벌 업체의 ‘OLED’ 상표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OLED’ 상표에 대한

LG전자의 독점권을 인정할 것인지, ‘OLED’ 상표가 식별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그 첫 판단이 될 특허청의 정보 제공 채택 여부가 사뭇 궁금하다.

락앤락 vs 삼광유리

: ‘GLASSLOCK’-끝나지 않은 상표권 분쟁



락앤락과 삼광유리는 유명한 업계 라이벌 중 하나다. 1998년 사면결착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내놓은 락앤락은 주방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급성장, 금세 국내 플라스틱 밀폐용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유해성 논란이 번지면서 락앤락 대신 2005년 말 유리 밀폐용기를 내놨던 삼광유리 글라스락이 상승세를 타게 됐다. 이후 락앤락도 유리 밀폐용기를 내놨으나 먼저 시장에 진입한 삼광유리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부터 양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삼광유리는 지난 2005년 9월 특허청에 ‘Glasslock’ 상표출원을 냈으나 락앤락이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특허청은 상표등록 거

1) 정보제공: 상표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로서, 누구든지 상표등록 출원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상표등록 거절이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절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삼광유리 측이 이에 불복한 심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았다. 또한, 락앤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Glasslock의 상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2007년 12월 대법원이 'Glasslock' 상표와 'LOCK&LOCK'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며 삼광유리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있다.

양사의 상표 전쟁은 비단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로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락앤락은 베트남, 칠레 등 해외 6개국 특허청에 '글라스락(Glasslock)' 상표를 삼광유리보다 먼저 출원하였으며, 이에 대해 삼광유리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양사의 상표권 대립이 첨예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양사 브랜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LOCK' 부분 때문이다. 'LOCK'이 '밀폐용기'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부분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사 상표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할 것인데 'LOCK'을 완전히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락앤락은 우리나라 밀폐용기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밀폐용기에 처음으로 'LOC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 'LOCK'을 포함하는 다른 브랜드들이 출시되게 되면서 'LOCK'의 식별력이 점차 희석화되면서 락앤락 측으로서는 'LOCK' 부분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지금의 형국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락앤락과 삼광유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Glasslock' 상표 사용으로 인해 복잡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국내 밀폐용기 업계를 대표하는 양사로서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끼리 지리한 상표권 분쟁을 계속하기 보다는 양사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인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길 바란다.

올리비아 로렌 vs 올리비아 하슬러



최근 여성복 가두점브랜드인 '올리비아하슬러'가 라이벌 업체의 여성복 '올리비아로렌'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및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올리비아하슬러'를 만드는 패션그룹형지(주)는 '올리비아로렌'을 생산하는 (주)세정이 낸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각으로 승소했다. 두 회사의 상표권 싸움은 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8년 패션그룹형지(올리비아하슬러)가 세정(올리비아로렌)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형지는 올리비아로렌이 먼저 등록한 올리비아하슬러와 비슷한 상표라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세정의 손을 들어줬다. 브랜드이름은 비슷하나 글자 수 차이 등 실질적인 상표가 다르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낸 (주)세정의 무효소송의 심결문을 살펴보면 "올리비아하슬러가 올리비아로렌과 외관이 다르고 관념(인식)·명칭(이름)도 서로 비슷하지 않다"며 "따라서 두 상표가 수요자(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질 염려가 없다"는 이유와 함께, "올리비아하슬러 등록상표출원 기준으로 볼 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 상표가 주지 저명성(유명함)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결했다. '올리비아하슬러'가 '올리비아로렌'과 비슷하지 않

는 패션그룹형지의 독립적 상표라고 보고 손을 들어주었다.

양 상표의 공통적인 부분은 ‘올리비아’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상표의 앞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6~7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긴 음절의 해당 상표들을 ‘올리비아’ 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특히, 의류 브랜드에서는 비교적 긴 디자이너의 이름이 그대로 브랜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거래계에서는 앞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이와 비슷한 경우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주)형지로서는 거래계에서 실제로 일반수요자들이 출처를 오인, 혼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해당 상표 분쟁에서 승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해당 상표 분쟁에서 (주)세정 측이 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는 오히려 법원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올리비아 로렌과 올리비아 하슬러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양 상표는 비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 것이다. 해당 분쟁은 구성요소 ‘A+B’와 ‘A+C’ (A가 식별력이 있는 부분임을 전제)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A’가 공통되어 ‘A’가 분리관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출처의 오인, 혼동 유무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결론



이 밖에도 식음료 업계의 오래된 라이벌 관계인 (주)해태제과와 (주)롯데제과는 ‘자일리톨’ 상표권 분쟁, ‘석류미인’ 상표권 분쟁, ‘아이스큐브’ 포장 디자인권 분쟁 등으로 인해 상표권 분쟁을 지속해 왔다. 이렇듯 라이벌 업계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상표권 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자사의 해당 제품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기도 어렵고, 모방상표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낙인 찍히다 보면 제품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분쟁을 지속하여 결국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처 뿐인 영광만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라이벌 업계와는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전략 수립의 초기 단계, 즉,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며, 제품의 유행을 따라 부득불 동종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쓸 수 밖에 없다면(보통은 식별력이 약한 부분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초기부터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를 도안화함으로써 외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든지, 제품 포장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주는 등 반드시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점을 마련해 두어야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2. 6 |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최 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의사확인제도에 관하여

개정 상표법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다.”는 제3조 전단의 규정을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해당 상표법상 규정에 따르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출원인 등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상표법 제3조에 근거해서 상표등록의 거절사유가 됨을 상표심사기준상 명시하였다.(상표심사기준§5)

그리고, 심사단계에서의 사용의사의 확인에 관해서는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상표법 제3조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출원인이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경우”,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업 또는 보험업, 항공운송업 등과 같은 대규모 자본 및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그 밖에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해 온 경우 등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상표심사기준상에서 구체화하였다.(상표심사기준§42조의2)

이상과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쟁점사항으로서는, 우선 첫 번째로, 출원단계에서 상품류구분상 5개류 이상의 지정을 근거로 하여 사용의사확인에 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에, 예를 들어 5개류에 해당하는 상품류를 2개와 3개, 1개와 4개 등으로 분할하는 것과 같은 관련 상품류의 분할출원을 통해서 출원단계에서의 거절이유의 극복이 손쉽게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할출원이 상표사용의사확인과 관련된 거절이유의 극복을 위해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한, 5개류 이상으로 출원된 다류의 상표출원이 상표사용의사가 없음으로 인한 실제적인 등록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실제로 상표사용의사가 없거나 상표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분할출원을 이용해서 사용의사확인을 회피함으로써 등록된 지정상품들에 관하여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통해서만이 그 등록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추후에 이해관

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불사용상품에 대한 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표심사기준상 심사단계에서의 사용의사확인시스템이 도입취지에 맞게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안의 발생 시에 출원 시에는 사용의사를 입증하기 힘들었으나, 등록 후에 사용에 대한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 상표권자가 현재 등록상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현재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급적으로 사용의사의 확인인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상표심사기준 제42조의2의 해석참고자료에 따르면, 사용의사확인과 관련하여 “출원 후 3~4년 내에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의사를 표시한 상표사용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출원 후 3~4년이면 이미 상표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하므로, 출원 시에는 사용의사의 입증이 어려웠지만 출원 후 3~4년이 지난 시점인 등록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상표사용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소급적으로 출원 시의 사용의사의 인정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의 불사용 또는 사용의사부존재로 인한 무효심판청구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고, 상표권자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표법 제3조의 적용에 의한 상표등록의 무효를 회피하기 쉬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무효심판청구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해 본다면, 등록 전의 불사용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청구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 등록 후의 불사용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양 심판제도의 적절한 상호보존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가 상표법상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사용취소심결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상표권침해 시부터 심결확정 시까지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이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출원단계에서의 상표의 불사용이나 사용의사부존재에 근거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상표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무효심판청구활용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단계에서는 분할 등을 통해 거절이유에서 벗어나고, 등록 이후의 단계에서도 심판청구 시 등록 이후의 사용 등을 근거로 하여 출원 시의 사용의사를 소급적으로 역입증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악용된다면, 개정 상표법상 제3조에 근거하여 상표의 사용의사확인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거절 및 상표등록 무효의 적용은 무의미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상표심사기준상 “그 밖에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해 온 경우 등 심사관이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사용의사확인의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유사한 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표심사기준 제42조의2의 해석참고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관계가 없는 지정서비스업은 출원인이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업을 복수로 지정한 경우를 말하며, 복수의 서비스업은 2개 이상의 유사군코드가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 ‘출원인이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업’

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으로서, 어떤 서비스업들이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석이 있어서 판단기준상의 더욱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출원 시에 출원인은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미리 검토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용에 관한 기준시점을 출원 시로 할지, 의견 제출통지시점으로 할지, 등록시점으로 할지, 등록 이후 시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며, 단지 현재의 상표사용사실이나 또는 향후의 상표사용의사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사실의 인정이나 사용의사의 인정을 통해 무조건 상표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표심사기준상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표법상 어설픈 사용주의의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주의의 개념을 일찍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던 미국에서의 등록을 위한 사용입증 등과 같은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등록결정시점 등에 실제적인 사용사실의 입증서류 등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은 등록요건으로서의 실질적인 상표의 사용을 담보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액 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2조¹⁾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동 제도와 관련하여, TRIPs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한·EU FTA 협정서에는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도입하고 있었다.²⁾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제67조의2 제1항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에,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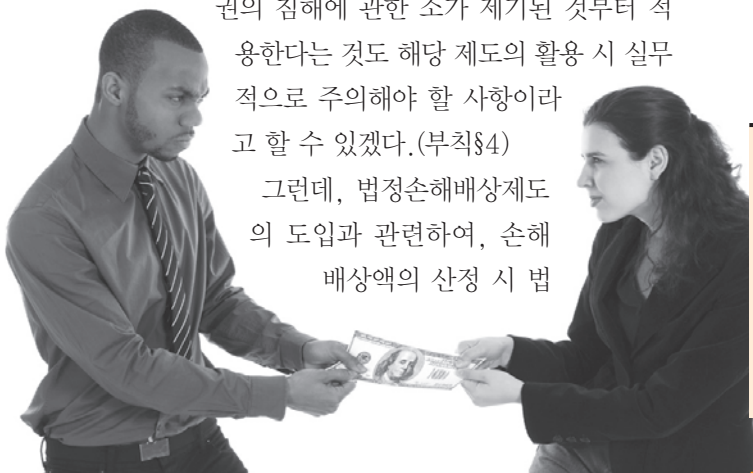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 67조(손해액의 추정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즉, 5천만 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해당 제도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개정 상표법의 시행 일인 2012.3.15. 이후 최초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

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도 해당 제도의 활용 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부칙§4)

그런데,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법

원의 재량권을 다소 침해할 여지가 있고, 재산권에 대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은 실손해배상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액수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것은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의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침해사실만을 입증하고 손쉽게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하려고 하는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³⁾ 이와는 달리,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실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지식재산권의 침해소송에서 입증을 못해 실손해액보다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고, 실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어 권리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을 해당 제도의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논거로 들고 있음을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와 FTA의 체결국으로서 우리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준 미국의 연방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상표권자는 피고가 위조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실손해배상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15 U.S.C. § 1117(c)) 즉, 위조상표의 사용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주요한 적용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에 법정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단위 상품 1건당 최저 1,000 달러 이상 20만 달러 이하로 정하고 있고, 위조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고의침해⁴⁾인 경우에는 최고 2백만 달러까지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한다.(15



1) 6.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2) 한·EU FTA협정문 제10.50조 제3항
 - 민사 사법절차에서 상표의 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사전설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3) 「한·미 FTA 국회검증 75대 주요과제」, 한·미 FTA 졸속협상 반대 국회비상사국회의, 2007.

U.S. C. §1117(c)⁵⁾ 다만, 원고가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손해나 비용의 청구는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국 판례상 보여주고 있다.⁶⁾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의 구제는 실손해를 기초로 하는 전통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⁷⁾ 보상적인 측면과 징벌적 측면 모두를 목표로 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상표법이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요한 목적은 손해액이 불확실한 경우에 금전적 구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의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사실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법원이 정해진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에서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⁸⁾ 즉, 미국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실손해액의 입증이 불확실함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편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실손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그 법적취지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관련하여 몇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등록상표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우리나라 판례 태도가 실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로 인해 상표권자에게 실손해가 존재할 것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개정 상표법상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제도에 낳은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그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 1116 (d)(B))에서는 법정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특허청에 연방상표주등록부에 등록된 것으로서 사용 중인 것(in use)일 것을 요구하므로, 법 정손해배상제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사용 중인 등록상표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 해석에 있어서도 실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실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등록상표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은 하고 있으면서 실손해가 존재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타당한 것이다.

두 번째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미국법상 위조상표에 해당하여야 법정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법상 상표위조행위라는 것을 유사범위 내의 상표권 침해와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개정 상표법에서는 “위조상표”라는 용어대신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법 규정상 명확하게 한정하였다. 이것은 미국 연방상표법(15 U.S.C § 1116 (d)(B))에서 등록상표와 위조상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구별이 곤란한 것(identical with, or substantially indistinguishable)”으로 될 것이 법정손해배상의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의 법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표장이 위조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를 위조상품에 사용하면, 법정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미국 판례상 출처표시로서 상표적 역할을 하는 진품 코카콜라병에 불법제조된 가짜 콜라를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전



체적으로 위조상표로 취급하여 법정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볼 때에,⁹⁾ 상표가 위조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를 위조상품에 사용하면 위조상표로 취급함이 타당할 것이다.¹⁰⁾

결국 위조상표로서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표권 침해만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단순한 유사범위 내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용은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애초에 라이선스(상표의 사용권자)였던 자가 계약종료 후에 재고처리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계속할 때에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상표법(15 U.S.C § 1116 (d)(B))의 위조상품에 관한 단서규정에서 “문제된 상품의 제조 당시에는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에 대한 허락 받은 지위에 있었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¹¹⁾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의 상표권 침해의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표위조행위로 보아 법정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한편, 이번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법률상 도입된 것은 상표법과 저작권법뿐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각 저작물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법정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저작권법 제125조의2),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구별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하여

다른 산업재산권법인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과는 다르게 상표법만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

생한다는 법적요건을 이번 개정 상표법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같은 산업재산권법으로 여전히 전용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의 내용 때문에,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은 더욱 혼란을 초래하게 된 면이 있다.

즉, 개정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은 통상사용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58 ① i) 그리고,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처분의 제한도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58 ① ii) 따라서, 실제적으로 전용사용권은 그 효력에 관한 법률상 요건 면에서 통상사용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사용권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오해

4) 주로 위조대상상표가 유명상표이거나 법원의 금지명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러한 의도적(willful)인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Cornell University Lawschool website(<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1117>) 참조.
 6) K and N Engineering, Inc. v. Bulat, 510 F.3d 1079, 85 U.S.P.Q.2d 1372 (9th Cir. 2007).
 7) Sara Lee Corp. v. Bags of New York, Inc., 36 F.Supp.2d 161 (S.D.N.Y. 1999).
 8) 최경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3집제3호, 중앙법학회, 2011.9, 223쪽 참조.
 9) PepsiCo, Inc. v. Plank, Case No. CV 02-02476, 2002 U.S. Dist. Lexis 14378(C.D. Cal. July 18, 2002)
 10) 김원오,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검토”, 산업재산권 제24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12, 9쪽 참조.
 11) Cornell University Lawschool website(<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1116>) 참조.
 12) 김원오, 앞의 논문, 11쪽.

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특허청에서의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부동산 등기와 같은 형태의 등록을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간의 계약만에 의해서 법률상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일종의 계약 당사자 간의 동산의 양도를 통한 민법상 소유권의 효력발생의 경우와 유사하게 되므로, 이렇게 되더라도 개정된 전용사용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물권법정주의의 위배가 아니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전용사용권의 효력발생요건에 있어서는 통상사용권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권의 내용이 전용사용권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효력이 사용권자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양 당사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과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것인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권의 성질을 파악할 때에 실무상 계약서의 내용을 더욱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정리하며

이상과 같이 개정 상표법상 주요 쟁점사항이 될 수 있는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나 해석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해당 제도들 모두 한미 FTA라는 것을 통해 미국식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제에 다소간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도 미국의 사용주의적인 요소를 우리법제에 맞게 도입한 것이고,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역시 그러하며, 전용사용권

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도 미국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주의를 골격으로 해왔고, 실제 손해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었으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왔던 기존의 법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에게는 다소간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여전히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하게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을 폐지한 상표법은 산업재산권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당분간 혼란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기업 등의 지재권 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야 기업 등의 상표관리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특허청에서도 제도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정당한 상표사용자를 보호하고, 기업 등의 상표권 등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6 |



정 태 호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Report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심사

한미 FTA와 의약품허가 - 특허 연계 제도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Report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이노베이션 증진을 위한 특허제도 개혁논의의 확산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기업들과 발명자들이 쉽게 특허를 획득하고 저비용으로 특허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특허 출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SIPO), 한국 특허청(KIPO) 간 세계 특허제도의 조화와 심사협력을 위한 IP5 협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영연방 국가들 중 영국, 호주, 캐나다 간 벤쿠버 그룹의 결성 등 지역적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27개 회원국을 갖는 유럽연합(EU)과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회원국 간의

협력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유로존 금융위기 하에서 저성장, 높은 실업률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타개할만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노베이션의 증진을 위해 고비용 저효율의 특허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전반적인 국가 간 실체 특허법의 조화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로 인해 고비용,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에서 특허를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 등 경쟁상대에 비해 무려 10배가 높으며, 특허침해 소송 등 특허권의 실시를 위한 절차는 각 국가별 자국법과 판례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특허권자의 효율적 권리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럽의 법원별로 판사의 성향과 전문성, 법과 판례 적용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유럽특허에 대해 유무효 판단 또는 침해여부 판단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와 경쟁자 모두에게 특허분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각국 법원 간 일관된 판단이 결여되어 특허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유럽의 특허제도 개혁은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유럽통합특허 및 그 변역요건에 대한 법안과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법안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상기 개혁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유럽특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의 논의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도입예정인 유럽통합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동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비판론을 살펴보고, 향후 EU 통합특허법안의 처리전망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유럽 특허제도의 현실과 딜레마

1 특허등록 관련 문제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이 2011년 접수한 특허 출원건수는 유로존 재정위기 하에서도 역대 최고인 244,000건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과 대비하여 3.7% 증가하였다. 유럽특허청의 2011년 연보에 의하면, 한, 중, 일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여 2011년 전체 출원의 33%를 차지(2010년 30%)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의 특허출원은 전체의 38%를 차지하였고, 이 중 독일의 출원이 전체의 14%에 달하였다.

유럽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심사결과 특허를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당초에 지정하였던 국가들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EU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기 위해서는 각 EU 회원국 개별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하거나, EU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EPO에 출원한 후 원하는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유럽특허시스템은 1978년 8개 유럽국가가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을 비준함으로써 도입되었다.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는 EP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기구는 유럽특허청을 관할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2012. 5월 현재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특허 제도를 이용하면 유럽의 개별 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 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개별 EPC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성(patentability)을 통합하여 판단하여 준다. 즉 EPC에 의하여 유럽특허는 적어도 출원 및 심사 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특허가 부여되면 출원 시 지정하였던 EPC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이 허여한 특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특허정정, 특허취소 등)는 전체 특허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일 뿐이며,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즉, 유럽특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만 해당 국가 내에서 특허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EPC에 의거하여 유럽특허청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럽특허는 유럽공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지역 특허(regional patent)”가 아니고 유럽 특허 출원서에 지정된 국가별로 각각 등록되는 『1국 1특허 원칙』에 입각한 다수의 개별국가 특허(bundle patent)가 된다.

한편, 각 EU 회원국 별로 별도의 번역과 등록을 거쳐야 하는 EU의 특허제도와는 달리, 상표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EU 전체에 효력이 발휘되는 통합된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EU 집행위 산하 기관인 유럽상표청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 OHIM)을 통하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2 특허소송 관련 문제점

현재 EU지역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 중 90% 이상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의 법원에 집중 제기되고 있으며, 비록 전체 특허소송건수는 미국에 비하여 많지 않지만, 통상 이들 4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4개국에서의 소송비용은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에 비하여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오직 개별 국가의 법원만이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소송과 무효에 대해서 다룰 수 있고, EPC에 의거하여 한 번의 소송만으로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 유무효를 다룰 수 없으며, 동일한 유럽특허에 대해 다수 국가에서의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즉, 특허권의 등록 이후 발생하는 권리의 유무효, 특허권의 보호범위, 침해여부 판단은 개별 회원국 법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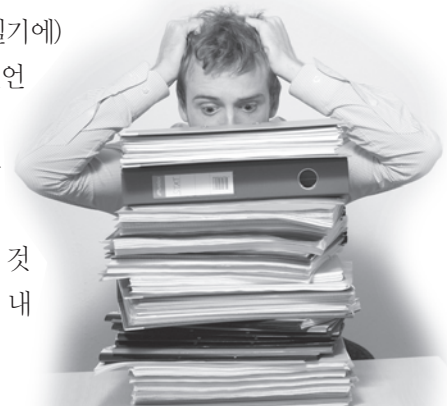
판단하게 되므로 유럽 전체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고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이 유럽 특허소송 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특허기술에 대해 여러 EU 국가에서 국경을 넘어선 침해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얻을 수 없는 것도 EU 특허소송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동일 그룹에 속하지만 다양한 EU 가맹국에서 설립되어 있는 몇 개 기업에 의해 행하여진 침해에 대해, 일국 법원 판결의 타국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특허권자는 EU의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허소송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의 소송비용이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허소송이 많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특허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판부와 그렇지 않은 재판부 등 판사들의 자질과 경험의 차이 및 제도의 차이로 기인하는 동일 특허에 대한 법원 간의 불일치된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법정지 선택(forum shopping) 현상마저 등장하고 있어 특허재판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침해 혐의자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주도

권을 잡기 위하여 소송 진행이 느린 회원국(예 : 이태리, 벨기에)의 법원에 특허 비침해 선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을 청구하면, EU 회원국의 다른 법원이 모순된 판결이 나올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U 내



법원 관할을 지배하는 “the rules of lis pendens”에 의해 EU 내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자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절차를 유예하는 상황¹⁾마저 발생하고 있다.

요컨대, 개별 특허분쟁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은 당사자에게 고비용을 초래하고, 복잡한 제도, 국가 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유럽 특허소송의 비효율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 특허제도 개선의 논의과정

1 공동체특허제도 설치 논의

개관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과다한 실정이다. 일단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유럽특허협약(EPC)과 EU 지침(Directive) 및 규정(Regulation) 등을 통해 전반적인 특허제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14,000 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²⁾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8월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는 공동체특허(Community Patent)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것이었다.

2009. 12. 1. 발효된 리스본조약(Lisbon Treaty)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언어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EU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EU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특허협약에 기초한 유럽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전체에 걸쳐서 부여되고, 이전되며,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으며, 동 규정안은 유럽특허청에 출원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큰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EU 특허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특허절차 중의 사용언어, EU특허의 재판관할, 판사의 자질과 역량, 공동특허법원의 자원 조달방안 등이다.

1) 이를 Italian Torpedo 또는 Belgian Torpedo라 표현하기도 한다.
2) EU 집행위 발표에 의하면 매년 EU에서 특허등록을 위한 번역비용으로 1억 9천만 유로(약 29조 원)가 소요된다고 한다.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 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유럽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³⁾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12월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럽에서의 진보된 특허제도에 대한 결정문 (Conclusion on an enhanced patent system in Europe)”에서는 재판관할 및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여전히 번역요건은 별도의 부속조약으로 나누어 추후 협의하기로 규정하였다.

2010년 7월 집행위는 통합특허에서 EPO 공식언어인 영, 불, 독 3가지 언어 중 하나의 언어로만 심사되고 등록되며 (다만 청구항은 나머지 2개 공식언어로 번역되어 공고됨), 대신 모든 EU 공식언어로 자동 번역 가능한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을 제공하고 출원인이 상기 3개 언어 이외의 모국어로 출원 시 EU 집행위로부터 번역비용을 정산하여 반환받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년 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 12. 8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27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에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EU 통합특허를 지체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 12. 14자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제안서를 EU 이사회와 의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 2. 15.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⁵⁾로 동의하였다.

동 절차의 도입논의로 EU통합 특허는 비록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제외되었지만 그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1. 3. 8.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 회원국, EU 및 EPC 계약국 간 유럽특허 및 EU통합특허의 소송을 전담할 통합특허법원(EEUPC)을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와 국제조약안은 EU 조약과 불합치라는 판단을 발표하게 된다. ECJ의 조약 불합치 의견은 단순한 언어 번역요건보다는 기본적으로 EEUPC에 비 EU회원국이 합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⁶⁾된 바, 적어도 유럽통합특허의 사법권을 관할하는 법원의

창설은 그 방법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2011. 6. 14. 당시 EU 의장국이던 헝가리는 ECJ의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감안하여, 비 EU 회원국들의 참여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안에 따르면, 통합특허법원은 유럽특허협약의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예 : 스위스 등)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법원은 전적으로 EU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1. 3. 10. EU 이사회는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 회원국 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2011년 4월 EU 집행위는 기존 EU 특허 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상정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 6. 27.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⁷⁾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추후 동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견(opinion)이 제출될 예정이며, 본회의에 제출되어 동의하면 법제화 될 예정이다.

한편, 자국 언어가 EU 특허의 공식언어에서 제외된 데 반발하여 강화된 협력절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12.2월 이탈리아는 자국의 동 체제 참여 시, EU 공동특허법원의 중앙부(central division) 법원의 유치가능성을 덴마크 EU 의장국에게 문의하였다. 이탈리아의 유럽부 장관 엔조 모아베로스 밀라네시(Enzo Moaveros Milanese)는 2011. 12. 5. EU 경쟁력 이사회에서 이태리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동 법원의 유치를 시사한 바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 법원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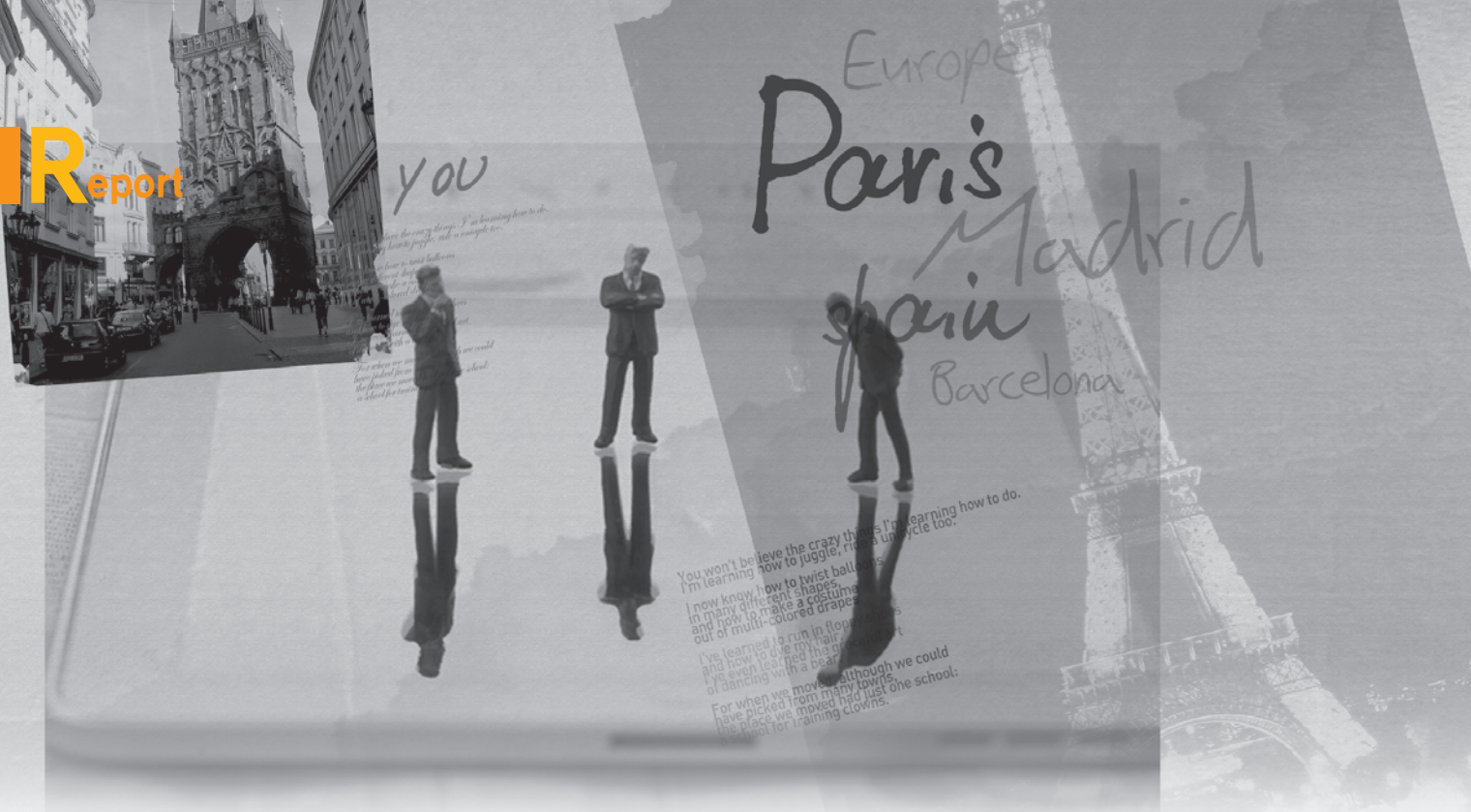
치를 위한 공식 신청은 2011. 12. 4. 마감되었으므로 현재 이탈리아의 법원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스페인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이탈리아가 강화된 협력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 유일한 불참국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국 출원인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EU 특허체제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입장 선회는 스페인에게도 동 절차 참여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호에 계속

2012. 6 |



- 3)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의상 ‘공동체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
- 4) 동 절차는 EU의 의사결정과정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소 9개 회원국 이상은 나머지 회원국의 동참없이 자신들만의 강화된 협력을 EU체제하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EU에서 동 절차가 사용된 유일한 사례는 2010. 7월 타 회원국에 비해 관대한 이혼법을 가진 스웨덴의 반발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한 EU 내 다국적 부부간 이혼법 도입과정에 불과하다.
- 5)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 6) 헌법 불합치의 첫 번째 근거는 EU회원국 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게 될 EEUPC로 인하여 침해나 무효소송에 대한 관할을 박탈당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두 번째 근거로 EU법 해석을 주 임무로 하는 역외 법원의 창설을 규정한 국제조약은 원칙적으로 EU 조약에 불합치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EEUPC는 EU 기관이 아니므로 EEUPC의 EU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적시하였다.
- 7)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심사

EPO에서 허용되는 발명의 범주(Category)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형태는 방법 청구항, 장치(시스템) 청구항, 기록매체 청구항,³⁸⁾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신호 청구항, 데이터 구조 청구항³⁹⁾이 있다.

방법 청구항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단계를 구성요소(Element)로 하여 기재하는 것이고, 장치(시스템) 청구항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수단을 구성요소로 기재하는 형태이며, 기록매체 청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를 발명의 대상으로 기재한 것이다.⁴⁰⁾ 다만, 기록매체 청구항은 대응하는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이 허용될 때에만 허용된다. 방법 청구항, 장치(시스템) 청구항, 기록매체 청구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과 신호 청구항은 특허대상인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Technical Features)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⁴¹⁾ 데이터 구조 청구항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자체가 특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을 내재적으로 포함하도록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EPO는 이처럼 컴퓨터 관련 발명을 다양한 형태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의 기술적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할 뿐, 이 특성의 표현을 특정한 형태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에 기초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발명을 물건과 방법의 범주로 나누어⁴²⁾ 장치와 기록매체는 물건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장치, 방법, 기록매체 청구항을 허용하지만,⁴³⁾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신

호 청구항, 데이터 구조 청구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EPO 심판부의 심결 사례

EPC에 따라 설립된 EPO 심판부(The Board of Appeal)⁴⁴⁾는 EPC를 적용하여 EPO 특허심사의 항소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EPC 가맹국의 특허청과 법원은 EPC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자국 특허법에 따라 자국 출원 또는 특허무효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EPO 심판부와 각국의 특허청 및 법원은 독립하여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법의 해석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나 EPO 심판부가 EPC 가맹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심사의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EPC의 해석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아래에서는 EPO 심판부의 심결 사례를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취급을 살펴보겠다.

EPO 심판부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주요 심결로서, 우선 Vicom 심결⁴⁵⁾은 2차원 데이터 배열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필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EPO 심판부는 비록 수학적 계산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가 물리적인 실체(Physical Entity)에 해당한다고 심결하여 그러한 기술적 과정에 관한 청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Computer program as such)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 사건은 수학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발명이라도, 기술적 방법(Technical Process)에 관한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최초의 심결이다.

Sohei 심결⁴⁶⁾은 복수의 사용자가 같은 스크린 화면에 다른 업무나 재정, 재고관리 등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EPO 심판부는 비록 이 발명이 특허 가능하지 않은 영역인 영업방법에 관한 것이지만 컴퓨터 메모리에 다른 업무나 다른 처리를 위해 다른 파일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기술적인 고려(Technical Consideration)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그 청구항이 기술적 특징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심결하였다. 이 사건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고려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대상이며, “그 자체(as such)”에 해당하는 요소가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 부가에 의하여 당연히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PO 심판부는 IBM 심결⁴⁷⁾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주어진 명령어(Instructions)의 실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추가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에 주목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에 통상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추가적 효과가 기술적 특징(Technical Character)을 갖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면, 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EPO 심판부는 EPC 제52조의 특허성을 검토할 때 단지 “추가” 기술적 효과만을 고려하면 되지 하드웨어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특정한 추가적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추가” 기술적 효과는 선행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이 분석은 EPC 제52조에 규정된 특

38) storage medium/data carrier with computer program claim.

39) data-structure claim.

40) Applied materials 심결(T874/02, 2004. 9. 30.) 청구항 17은 “A computer-readable medium having a computer readable program embodied therein for directing operation of a substrate processing apparatus comprising a processing chamber; a gas delivery system configured to deliver a process gas to said processing chamber; a plasma generation system configured to form a plasma from said process gas; a controller configured to control said gas delivery system and said plasma generation system; said computer-readable medium program including a set of computer instructions for carrying out the method of any of the claims 1 to 15.”이다.

41) IBM 심결(T1173/97, 1998. 7. 1.)

42) 특허법 제2조 제3호.

43) 우리나라에서 기록매체 청구항은 특허법에 기초한 1998년 “컴퓨터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44) EPC 제21조.

45) Vicom 심결.(T208/84, 1986. 7. 15.)

46) Sohei 심결.(T769/92, 1994. 5. 31.)

47) IBM 심결.(T1173/97 1998. 7. 1. 및 T0935/97 1999. 2. 4.)

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 분석과는 별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단 “추가” 기술적 효과가 존재하면,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저장 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 반송파에 실린 소프트웨어, 또는 심지어 소프트웨어 자체로 작성된 청구항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EPO 심판부는 유사한 기술적 특징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선으로 전송되거나, 데이터 전송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EPO 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에 대한 청구항이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EPO 심판부가 지적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장매체, 반송파, 방법 및 장치로부터 독립하여 청구하더라도, 특허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BM 심결에서, EPO 심판부는 발명의 대상이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인 청구항 20⁴⁸⁾과 발명의 대상이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Element)인 청구항 8⁴⁹⁾이 특허성이 있다고 했다.⁵⁰⁾

Philips 심결⁵¹⁾은 기능적 데이터를 기록한 기록매체(Record Carrier)가 정보의 제시 그 자체라 할 수 없으므로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특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기능적 데이터는 기록매체가 동작 가능한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을 내재하는 용어(부호화 화상라인 동기정보, 라인번호 및 주소)로 특정되는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PBS 심결⁵²⁾은 발명이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이 있어야 하는 것은 EPC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발명이기 위한 묵시적 요건이라고 명시하고, 경제적인 개념 및 영업 활동의 수법만을 지닌 방법은 EPC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특허대상 여부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으로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 접근방법은 EPC에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존 기술적 기여 접근방법을 폐기하였다.

Comvik 심결⁵³⁾은 기술적 부분과 비기술적 부분이 혼재하고 있으면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적 특징을 고려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하지만, 이 기여가 없는 기술적 특징은 진보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EPO 심판부의 심결은 특허 청구범위에 컴퓨터 관련 발명을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기술적 특성을 가지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며, 진보성 판단에서는 발명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선행기술에 비하여 기술적 기여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1. 11. 30. 선고 97후2507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래, 컴퓨터 관련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판결은 출원발명이 기본위드에 서브위드를 부가하여 명령어를 이루는 제어입력포맷을 다양하게 하고 위드의 개수에 따라 조합되는 제어명령어의 수를 증가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수치제어입력포맷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인 서브위드 부가 가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기계식별·제어·작동을 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켜 그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 가능성이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실시한 것이다.⁵⁴⁾⁵⁵⁾ 또한,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특허권침해금지 등)은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를 인정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기록매체 실시를 금하고 침해품인 기록매체를 폐기하라고 하였다.⁵⁶⁾

우리나라의 판례도 기록매체 청구항을 인정하고,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성을 확인하여 그 특허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확대심판부에 대한 EPO 청장의 의견문의

EPO 청장은 2008년 10월 22일 EPC 제112조 제 1항 (b)⁵⁷⁾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특허대상에 제외하는 EPC 제52조 규정의 적용에 관한 4개의 질문⁵⁸⁾을 확대심판부(The Enlarged Board of Appeal)⁵⁹⁾에 문의하였다.⁶⁰⁾ 이에 확대심판부는 EPO 청장의 의견문의에 대하여 대중에게 서면주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제출된 약 100건의 법정진술서⁶¹⁾를 검토하였다. 이후 확대심판부는 2010년 5월 12일 EPO 청장의 의견문의가 EPC에 따른 의견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8) 프로그램 프로덕트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될 때 청구항 1의 단계들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 부분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컴퓨터의 내부 메모리로 직접 로드(load)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
 49) 첫 번째 창(window) 내에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컴퓨터로 하여금 절차를 실행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수단……. 등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Element).
 50) <http://www.lawworks-iptoday.com/10-99/suryadev.htm>, (2012. 2. 20, 검색)
 51) Philips 심결.(T1194/97, 2000. 3. 15.)
 52) PBS 심결.(T931/95, 2000. 9. 8.)
 53) Comvik 심결.(T641/00, 2002. 9. 26.)
 54) 김관식,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 특허판례연구, 2009, 10-21면; 강동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대법원 판례해설 39호, 2002. 6. 264-282면.
 55) 박정삼, “아바타 서비스와 특허 침해”, LAW & TECHNOLOGY 제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06. 3, 100-105면.

5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문 디자이너에 의하여 미리 제작되어 저장된 캐릭터 구성요소들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각 샘플 이미지를 조합하여 캐릭터를 생성함으로써 온라인 또는 인터넷상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그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으로서, 청구항 1 내지 6은 정적(靜的) 캐릭터에 관한 방법의 발명이고, 청구항 7 내지 14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한 방법의 발명이며, 청구항 15는 정적 캐릭터의 생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이고, 청구항 16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이다. (청구항 7) 캐릭터 생성시스템에 적용되는 캐릭터 생성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단계;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들을 부위별로 합성하여 소정 개수의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 생성한 후,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부위별로 동적 특징이 부각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2단계;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부로 합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에 대한 이미지의 특징정보를 변경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방법. (청구항 16) 프로세서를 구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 시스템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기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구성요소에 대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기능; 사용자에게 의하여 선택된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들을 부위별로 합성하여 소정 개수의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 생성한 후, 생성된 합성 이미지 프레임들을 결합하여 부위별로 동적 특징이 부각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제2 기능; 및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일부로 합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구성요소에 대한 이미지의 특징정보를 변경하는 제3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57) EPC 제112조 제1항 (b)는 EPC의 통일적인 적용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법상 쟁점이 발생한 경우로서, EPO 심판부가 상이한 심결을 하면 EPO 청장이 확대심판부에 의견을 문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may refer a point of law to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where two Boards of Appeal have given different decisions on that question.”).
 58) Question 1: Claim category
 Can a computer program only be excluded as a computer program as such if it is explicitly claimed as a computer program?
 Question 2: Claim as a whole
 (a) Can a claim in the area of computer programs avoid exclusion under Art. 52(2)(c) and (3) merely by explicitly mentioning the use of a computer or a computer-readable data storage medium?
 (b) If question 2(a) is answered in the negative, is a further technical effect necessary to avoid exclusion, said effect going beyond those effects inherent in the use of a computer or data storage medium to respectively execute or store a computer program?
 Question 3: Individual features of a claim
 (a) Must a claimed feature cause a technical effect on a physical entity in the real world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claim?
 (b) If question 3 (a) is answered in the positive, is it sufficient that the physical entity be an unspecified computer?
 (c) If question 3 (a) is answered in the negative, can feature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claim if the only effects to which they contribute are independent of any particular hardware that may be used?
 Question 4: The activity of programming
 (a) Does the activity of programming a computer necessarily involve technical considerations?
 (b) If question 4 (a) is answered in the positive, do all features resulting from programming thus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a claim?
 (c) If question 4 (a) is answered in the negative, can features resulting from programming contribute to the technical character of a claim only when they contribute to a further technical effect when the program is executed?

다는 이유로 의견문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⁶²⁾ 그 구체적 이유는 EPC 가맹국 법원은 유럽특허 기구의 일부가 아니고 EPC가 EPC 가맹국 법원을 규율하지도 않으므로, EPC 가맹국 법원과 EPO 심판부 간의 판단차이는 EPC 제112조 제1항 (b)에 따른 EPO 청장의 의견문의 대상이 아니고 EPC의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EPO 심판부의 심결사례에서 상충하는 심결이 없다고 하였다.⁶³⁾

한편, 확대심판부는 4개 질문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가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선해하여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첫 질문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명확하게 청구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확대심판부는 기존 EPO 심판부의 심결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형식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이 있는 발명은 EPC에 따라 특허대상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추가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s)가 있으면 기술적 특성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청구항이 컴퓨터나 컴퓨터 기록매체의 사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 청구항은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등으로, 그 핵심은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 방법 청구항이라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확대심판부는 방법 청구항은 프로그램의 사용에 의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프로그램 자체에 의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EPO 심판부의 기존 심결도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물리적 실체에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는가이다. 이에 확대심판부는 기술적 효과가 실제 세상의 물리적 실체에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점에 대하여 EPO 심

판부의 심결에 상충하는 사항이 없으며, 청구항의 모든 특징은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특징의 비중을 평가하거나 발명의 핵심을 정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질문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행위는 기술적 고려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가이다. 프로그래머는 기계가 동작하도록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술적 고려를 항상 하고 있다고 인정되나, 확대심판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 특성이 있으려면 이 이상의 기술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확대심판부는 EPO 청장의 의견문의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EPC 제112조 제1항 (b)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EPO 심판부의 심결 사례를 명확하게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확대심판부의 답변은 그 의의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모든 특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확대심판부가 확인한 판단기준과 같다.

결론

유럽 내 특허심사에 관한 조약인 EPC는 제52조 제2항에 영업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불특허대상 '그 자체(as such)'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대상이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EPC 규칙 제42조 및 제43조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PC는 영업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이 있으면 불특허대상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EPO의 심사 실무를 규정한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기본적 고려가 다른 주제의 발명



들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포함한다면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특허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컴퓨터 관련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기술적 특성인 추가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s)를 가지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EPO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형식보다는 발명의 기술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고 있어, 컴퓨터 관련 발명을 방법 청구항, 장치(시스템) 청구항, 기록매체 청구항,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신호 청구항, 데이터 구조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PO 심판부와 EPC 가맹국의 특허청과 법원은 독립하여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법의 해석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 있다. 그러나 EPC에 따라 설립된 EPO 심판부가 EPC 가맹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심사의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EPC의 해석에 주도적이고 최종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EPO 심판부는 심결을 통하여 기록매체 청구항의 인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립성 인정기준(Further Technical Effects) 등을 제시하여 EPO 특허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PO 청장은 유럽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명 성립성 논란을 종식하고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EPC 제 52조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확대심판부에 의견문을 하였다. 이에 확대심판부는 약 100건의 법정진술서를

검토한 후, 2010년 5월 12일 EPO 청장의 의견문이 EPC에 따른 의견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견문의는 허용되지 않고 기존 EPO 심판부의 심결 사례를 들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EPO 심판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지지하였다

유럽에서는 종전에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나, 현재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술적 특성인 추가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s)가 있으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한 후 진보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추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컴퓨터 관련 발명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기술성(하드웨어와의 협동)이 있다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실무를 취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이 기술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012. 6 |



강 흥 정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

- 59) EPC 제21조.
- 60) <http://www.sipf.se/admin/photo/big/Remisser/G308en.pdf> (2012. 3. 31. 검색).
- 61) 약 100건의 법정진술서(Amicus curiae brief) 중 30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54건은 기업 등 산업계, 6건은 학계로부터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정진술서의 약 1/3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심사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약 30%는 현 상태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약 10%는 더욱 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62) OPINION of the Enlarged Board of Appeal of 12 May 2010 (Case Number: G 3/08)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DC6171F182D8B65AC125772100426656/\\$File/G3_08_Opinion_12_05_2010_en.pdf](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DC6171F182D8B65AC125772100426656/$File/G3_08_Opinion_12_05_2010_en.pdf) (2012. 3. 31. 검색).
- 63) 각주 59의 OPINION, 7면.



한미 FTA와 의약품허가 - 특허 연계 제도

현 대인의 삶에서 의약품은 필수 불가결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도시문명의 발달에 따라 병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의약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단백질 의약품과 관련한 특허권이 하나 둘씩 만료되고 있고, 바이오 시뮬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합법적인 복제약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의약 특허, 제네릭 의약¹⁾ 등과 관련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어떤 내용이며 향후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협정문 내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와 특허를 연계하는 조항으로, 의약 신청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허가된 의약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는 차후의 의약품의 허가를 보류함으로써 시판을 방지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²⁾은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

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처음 제출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원용하게 허가하거나 또는 당사국의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서 기 허가 받은 증거와 같이 이미 허가 받은 품목에 관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를 원용하여 허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a) 그 물품 또는 허가된 사용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중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다른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지 받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b) 그 물품 또는 허가된 사용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중에는, 특허권자의 허가 또는 묵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 물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허가 절차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후술할 미국의 Hatch-Waxman Act를 협정문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 협정문 제 18.92조 제5항의 (a)를 살펴보면, 유효한 특허권이 존속 중인 의약(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에 간이 신약 허가 신청(ANDA :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³⁾이 있는 경우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을 시판하려는 업자와 같이, 기 등록된 의약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활성을 가진 의약에 대해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원 정보를 의약품 허가 당국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기 협정문 제18.9조 제5항 (b)는 ‘특허의 존속기간 중에는’ 이라고 하고 있어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는 날까지 이행이 요구되며, FTA로 함께 도입되는 특허 존속기간 조정제도(PTA, Patent Term Adjustment) 등에 의해 상기 기간에서 추가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허가 절차 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 자체를 허용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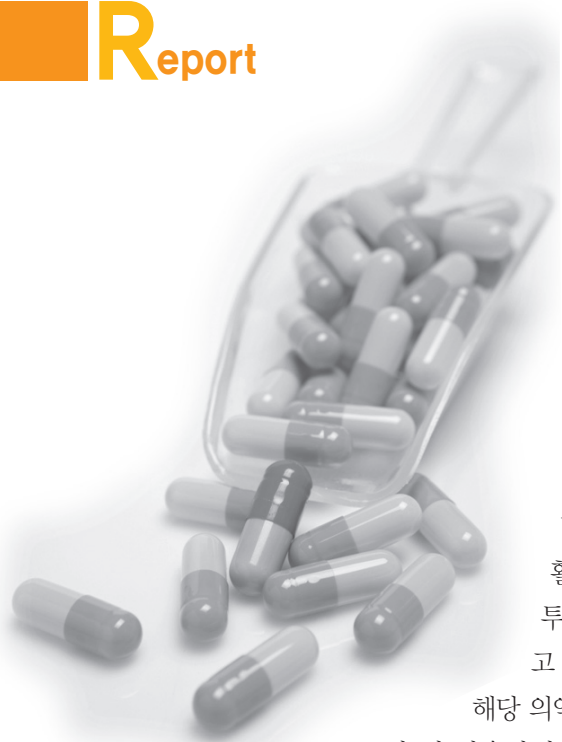
금지하지는 않으나, ‘시판 방지’는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네릭 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특허권자가 ‘동의(consent)’하거나 ‘묵인(acquiescence)’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 동의는 특허권자와 제네릭 업자 간의 민사적 계약에 의한 동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인은 특허권자에게 통지된 후에 특허권자가 아무 조치도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Hatch – Waxman Act와 NDA, ANDA, 오렌지북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Hatch-Waxman Act는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Hatch-Waxman Act와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 발행하는 오렌지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미국 식품 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미국 내 판매를 허가 받은 모든 의약품을 “Approved Drug Products with 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s”으로 목록 공시하고 있다.

- 1)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 함량, 안전성, 강도, 용법, 품질, 성능 및 효능 효과가 같은 의약품으로, me-to drug 또는 copycat drug라고도 함.
- 2)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 원문
Where a Party permits, as a condition of approving the marketing of a pharmaceutical product, persons, other than the person originally submitting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to rely on that information or on evidence of safety or efficacy information of a product that was previously approved, such as evidence of prior marketing approval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r in another territory, that Party shall: (a) provide that the patent owner shall be notified of the identity of any such other person that requests marketing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during the term of a patent 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 as covering that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and (b) implement measures in its marketing approval process to prevent such other persons from marketing a product without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the patent own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notified to the approving authority as covering that product or its approved method of use.
- 3) ANDA :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의약품 허가를 위한 신청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활성을 가지는 약품이 선 등록되어 있는 경우, 후 등록 신청자가 선 등록 신청자의 자료를 원용함으로써 별도 증빙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주는 간이 신청 제도



이 목록은 과거에 오렌지 색 커버로 출판되어 ‘오렌지 북 (Orange Book)’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해당 목록에는 의약 활성 및 의약품의 투여형태를 공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약품과 관련하여 물질 및 사용방법에 대해 기재한 특허에 대해서도 함께 FDA에 제출토록 하여 함께 공시하고 있다.

최초로 특정 물품을 의약으로 신청하는 자는 NDA⁴⁾를 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NDA에는 신청하는 신약의 화학적 특성, 생산방법, 품질관리, 약동학, 약리학, 독성 등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 안정성 시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해당 물질 및 사용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특허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FDA는 이러한 내용을 심사하여 오렌지북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Hatch-Waxman Act는 무엇일까? Hatch-Waxman Act는 1984년 입법된 규정으로, 제네릭 의약과 같이 생물학적 활성이 동일한 의약에 대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의 신약 신청에 비해 간단하게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ANDA 제도를 도입한 규정이다.

다만 ANDA 제도의 규정은 해당 활성을 가진 의약에 대한 최초 신청자인 NDA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ANDA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 신청 시 특허에 대해 함께 신고한 특허권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제네릭 의약 허가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Hatch-Waxman Act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 의약 허가 품목과 관련한 특허 관계를 반드시 진술하여야 한다.

진술 내용은 1) 관련 특허 없음, 2) 관련 특허의 존속 기간 만료, 3) 존속 중이나 만료 후에 실시 예정, 및 4) 관련 특허가 무효임 또는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진술이 가능한데, 이 중 4)에 해당하는 진술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을 특허권자 및 해당 의약을 허가 받은 허가권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통지된 내용을 받은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대응하지 않으면 제네릭 의약 허가 신청이 승인되게 되며, 이를 통지 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Hatch-Waxman Act에 의해 허가 신청은 30개월 동안 유보되게 된다.

이러한 Hatch-Waxman Act에서,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는 ANDA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정문도 “그러한 정보를 원용하게 허가하거나, ... (중략)...,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를 원용하여 허가하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규정을 ANDA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안정성 및 유효성 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품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타인 특허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국내 움직임

지금까지 살펴본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식약청에 제출될 때, 이러한 허가신청 사실을 관련 신약의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신약 특허권자가 동 제네릭 의약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침해예방절차를 마련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시행 시기는 1) 신약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한미 FTA 발효와 동시이며, 2) 침해예방 절차 마련에 대한 내용의 경우, 한미 FTA 발효 후 3년 동안 유예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련 신약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오렌지북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새로 제작해야 한다. 이 리스트를 ‘그린 리스트’라고 하며, 이를 위해 얼마 전 식약청과 특허청은 Task Force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T/F의 주요업무는 의약품 특허 등재 업무 및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의약품 특허관련 소송 지원이다.

정리하자면, 국내 원천 의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제3자의 제네릭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과 관련된 제네릭 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제3자에게 소송 또는 심판을 제기하면 특정 기간 제네릭 신청자의 허가를 보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으로 의약품의 원천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줄 수 있게 된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한미 FTA 협정문 중 의약 허가-특허 연계 제도 및 그와 연관된 미국의 Hatch-Waxman Act, 미국 FDA의 오렌지 북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그린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제도는 국내에 없던 제도로서, 특허권이라는 사적 권리를 공적 장치로 보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국가가 제도로서 특허권자에게 관련된 허가 신

청이 있음을 통지해 주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제 3자 진입을 유예시켜 주는데, 이는 특허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현실상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원천 의약 특허의 보유 비율보다 제네릭 의약의 비중이 훨씬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FTA로 인한 상기 제도의 도입은 시기 상조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07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으로 관련 소송건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심판과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심판,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신약 허가 특허권자와 후발 제약사의 균형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의 마련, 후발 제약사의 도전을 장려하는 제도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2. 6 |

〈참고문헌〉

1. 한미 FTA 협정문
2. 특허청 보도자료(www.kipo.go.kr)
3. 미국 식품의약국(www.fda.gov)



4) NDA : New Drug Application, FDA에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제도



특허 Q&A

Q. 국제출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일을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는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 → (필요 시) 명세서 보정 →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 →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 오더 송부 →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출원 → 한국 대리인에 보고 → 한국 대리인이 한국출원인(의뢰인)에 대해 보고” 와 같은 진행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 해외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발명만화 _ 물래발명이야기

건강하게 삽시다 _ 다이어트, 빠르게 대신 현명하게 하자!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미국 Apple社,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일부 취하

지난 5월 7일, 미국 Apple社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들 중에서 절반의 소송을 취하했다.

Apple社가 절반의 소송을 취하한지 약 5시간 후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12개 특허침해소송들 중에서 5개의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011년 4월 15일, Apple社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컴퓨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양측은 10여 개 국가에서 약 30건의 소송을 벌여왔다.

양측이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은 당해 사건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Lucy Koh 판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Lucy Koh 판사는 양측의 소송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한편, 지난 4월 17일 Lucy Koh 판사는 양측에게 분쟁 합의를 위한 협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이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의 결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속단할 수 없다. 양측이 1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서로 특허소송을 치르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과 최고경영자들이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은 협상의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재판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이 분쟁해결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측이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은 협상 타결을 위해 사전에 양보하려는 자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려는 자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출처 <http://www.appleinsider.com>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Facebook社와 Leader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Leader社 패소 판결

지난 5월 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인터넷 기반체계 개발기업인 Leader Technologies社가 Facebook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11월 19일, Leader社는 Facebook社가 온라인 대량 의사소통기술에

관한 자사의 특허(U.S. Patent No.7,139,761)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월 28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Facebook社가 Leader社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연방법률(35U.S.C.§102(b))에 의거해 특허출원을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구현한 제품을 공개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 특허는 무효라고 설명하면서 Leader社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Leader社는 Facebook社가 공개사용 및 판매로 인한 특허 무효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으며 배심원들을 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Leader社의 Mike McKibben 회장은 CAFC 판결에 실망을 표하고 법원이 지식재산의 침해 및 증거조작을 '기업관행'으로 묵인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배심원단이 인정한 바와 같이, Facebook社가 명백히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법원의 결정이 Facebook社의 기업공개 일정과 맞물려 내려진데 대해 의심을 표했다.

이 사건을 통해 Leader社는 Facebook社의 온라인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술이 자사의 발명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이 Leader社の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Leader社は 손해배상 및 로열티 등과 같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게 됐다.

향후 Leader社가 이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따라서 Leader社は 신중히 항소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처 *massachusettsnewswire.com*



일본 츠루市, 요코하마국립 대학과 포괄적 제휴협정 체결

지난 5월 21일, 일본 츠루(都留)市와 요코하마국립대학(横浜国立大学)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카츠라가와(桂川) 지역의 자원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휴협

정을 체결했다.

이에 요코하마국립대학은 츠루市에 대학의 지식자원을 제공하고 市는 학생들에게 지식자원의 활용을 위한 연구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 협정이 체결됐다.

요코하마국립대학은 사회공헌을 대학의 사명으로 내걸고 지역 협력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에 「지역실천교육연구센터(地域実践教育研究センター)」를 마련했다.

또한 학점취득으로 연결되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원이 츠루市の 지역 발전 정책을 연구하도록 지원했다.

요코하마국립대학의 스즈키쿠니오(鈴木邦雄) 학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대학의 지식자산을 활용해서 市の 「Smart City」 구상이나 환경보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츠루市는 효율적인 지방도시 건설을 위한 「Smart City」 구상을 통해 인구 확대 및 지역 산업진흥에 주력했다.

현재 인공하천인 「카츠히와(家中川)」의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수력발전 설치를 하고 자연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코하우스 및 식물재배시설 등 환경학습을 위한 시설을 정비했다. 또한 츠루市的 소규모 수력발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계획을 작성하거나 실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市와 대학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

출처 *headlines.yahoo.co.jp*

일본 야마가타대학, 「은나노 입자 잉크」의 특허정보 공개

지난 5월 22일, 일본 야마가타대학(山形大)은 독자 개발한 「은나노입자 잉크」 관련 기술정보를 일본 국내 제조업체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야마가타대학은 특허정보 공개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특허정보를 제공받은 기업들이 관련 특허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해외 경쟁기업들이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은나노입자 잉크」는 휴대폰과 IC 태그 등 모든 전자기기로 이어지는 특수잉크로 야마가타대학의 쿠리하라 마사토(栗原正人) 교수가 개발했다.

쿠리하라 교수는 2년 전에 「은나노입자 잉크」 제조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출원 중인 기술을 2012년 4월부터 일본 내 18개 전기관련 기업에게 공개했다.

특허출원 중인 기술의 경우 참가기업은 출원에서 취득까지의 기간 동안 최신 연구정보를 제공받아 자사의 R&D에 적용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야마가타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응용(유사)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외국 기업의 유사특허출원 및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마가타대학은 이러한 시스템을 「나

세계는 지금

노메탈스쿨(ナノメタルスクール)」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기업은 수업료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했다.

출처 headlines.yahoo.co.jp



중국 광둥성, 산업 구조조정 및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강조

지난 5월 7일, 중국 광둥성(广东省)은 「광둥성 우수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我省优势传统产业转型升级的意见)」을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견은 산업의 구조조정 및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통산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견은 또한, 기업들이 기술센터,

연구소 등 혁신부서를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 등 기술 및 경영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 의견에서 전통산업이란 섬유 의류, 식음료, 건축자재, 가전기기 등과 같은 부문의 산업들을 지칭함

이 의견에 따르면 광둥성은 2015년까지 판매수입이 1,000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기업을 2~3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의견은 이와 관련해, 산업 구조조정 및 발전을 위한 300개 시범기업을 지정하고 100개의 모범 시범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 등에 투자할 예산을 활용해 기업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에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15% 감세하는 등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nipso.cn>

중국 국가임업국, 식물신품종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단속 계획 발표

지난 5월 14일, 중국 국가임업국(國家

林业局)은 식물신품종 보호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물신품종권 침해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행정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단속은 국가임업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정단속이며, 식물신품종 보호의식 강화 이외에도 신품종권의 활용률 향상 및 행정단속 능력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가임업국은 6월 말까지 전국의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단속은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침해가 심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식물 품종권 보유 및 활용이 많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대상으로 행정단속 시범업무를 진행했다. 시범지역에서 수집된 행정단속 데이터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기관과 원활한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2011년 중국의 식물신품종 출원건수는 전년대비 77.2% 증가한 139건이었으며, 52건의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해 그 중에서 11건이 등록됐다.



유럽 특허청, 러시아 특허청과 특허문서 기계번역 합의

지난 5월 16일, 유럽 특허청(EPO)은 러시아 특허청(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과 특허문서 기계번역을 통한 혁신증진 및 협력강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PO와 Rospatent는 EPO 웹사이트 상에서 영어 및 러시아어로 특허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문서 전문을 교환했다.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이번 합의로 유럽 특허시스템 이용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된 특허문서를 접할 수 있게 됨
- 특허문서는 정보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유럽연합(EU) 및 러시아 두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의 혁신 프로세스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선될 것임

Rospatent의 Boris Simonov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이번 EPO와의 협력이 두 지역 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임
- 두 지역의 협력강화는 최근 증가된 특허출원 건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및 2011년에 EU 회원국에서 Rospatent에 출원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러시아에서 EPO에 출원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함

출처 <http://www.epo.org>

유럽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포괄적 기술협력 합의

지난 5월 3일, 유럽특허청(E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특허협력조약(PCT)의 절차적 구조개선 및 출원인의 PCT 이용 증대를 위한 3년간의 포괄적 기술협력을 합의했다.

동 합의에는 특허 분류 및 검색, 특허허여 과정에서의 품질 및 효율성 증대,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상호 협력방침이 포함됐다.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EPO와 WIPO 간의 협력은 오래 지속되어온 두 기관의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음
- 양 기관은 지식재산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기구로서 국제특허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 및 절차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음
- 장애요소가 없는 특허정보시스템을 수

립하고 일반 대중에게 기술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혁신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임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WIPO와 EPO는 산업 및 대학, 공공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프로그램을 증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임
- 이번 합의는 PCT를 국제특허시스템의 업무공유 플랫폼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데서 기초하고 있으며 기존의 두 기관 사이의 성공적인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임
- 유럽의 오랜 다자주의 전통에 기반을 둔 EPO의 WIPO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향후 PCT를 둘러싼 상호 이해를 위한 연례행동을 수립할 계획임
- 이번 협력의 목표에는 PCT 문서에 대한 완전한 전자적 교환 및 특허정보의 디지털교환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

PCT는 WIPO가 관리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 약 140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고, 발명가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특허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다.

EPO는 PCT에 따라 신청된 출원서와 관련하여 약 7만 건의 특허검색 및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전체 40%에 해당) 가장 큰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이다.

출처 <http://www.epo.org>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PO NEWS

특허청, 발명교육으로 도서벽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배달

특허청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발명체험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도록 하는 2012년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운영한다.

금년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은 발명교육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도서·벽지의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은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 위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기관별로 1차례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5차례로 늘려 교육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3일, 강원도 철원의 청양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35개 기관에 차례로 발명교육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발명품을 손수 만들어 보면서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발명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나아가 발명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될 예



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우수학생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7월과 12월에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나눔발명캠프'에 초청돼 학생들이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발명심화 교육을 제공받을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소외계층으로도 찾아가는 나눔발명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방문이 어려운 도서·벽지의 학교에 인터넷 방송과 화상 통신을 이용한 원격 발명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나눔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청소년 발명가 양성,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선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기업의 교육기부를 통해 청소년을 창의적 발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2012년 YIP(Young Inventors Program,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밝혔다.

YIP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기술분야와 관련한 발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는 기업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KT, 삼성전자 등 국내 8개 기

업이 참여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현장 체험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0개 팀에서 50개 팀으로 참가팀 수를 확대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발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과제를 출제하였다. KT의 "스마트폰 및 패드 단말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한경희 생활과학의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한 생활가전과 생활용품 아이디어" 등의 과제가 그 예이다.

YIP 프로그램 참가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최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후원기업과 번리사로부터 교육 캠프와 기업 현장 견학, 특허 컨설팅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개선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식재산 강국의 꿈나무 청소년발명기자, 전국을 누빈다!

위대한 발명가를 꿈꾸는 초·중·고등학생 2,879명이 지난 5월 11일,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발명기자로서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청은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소년

발명기자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작년까
지 연중 1,000명이 활동하였으나, 주5일
제 수업에 적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식되면서 금년에는 전국 1,500여 개의
많은 학교에서 발명기자를 추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취재 전문교육과 지
식재산 뉴스를 만들어보는 발명캠프가
함께 열렸으며, 열심히 활동한 11명의 우
수기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도 수
여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식
재산 강국의 새로운 출발은 청소년 발명기
자단으로부터 초석이 다져진다.”고 강조하
면서, “모든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의성을 키워나간다면 세계를 이
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금년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발명기자를 선발하고, 창의체험활동으로
인정되어 활동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한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기에 꾸준한 체험활동이 가능하
기 때문에 활동기간과 우수기사 선정에
따라 승급도 할 수 있다. 올해는 총136명
이 수석·책임·선임기자로 승급했다.

※ 수석기자 : 4년 이상 활동한 기자 또
는 월 수상 누적 9회, 책임기자 : 3
년 이상 활동한 기자 또는 월
수상 누적 6회, 선임기자 : 2
년 이상 활동한 기자 또는
월 수상 누적 3회



세관등록제도를 이용한 짜퉁 차단법

특허청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
내는 물론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는 우
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 세관(해관) 지식재산권 등록이란, 현지
국가에 등록된 지재권을 현지 국가 세
관의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함으로
써, 수출입 되는 모조품을 세관의 자발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는 제도

올해는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지식재
산센터(IP-DESK)¹⁾가 설치된 5개 국가²⁾
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기
업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 및 비용을 지
원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은 한
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IP-DESK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 모조품의 최대
생산지로서 전 세계 모조품의 2/3 이상
이 중국에서 생산³⁾되어 동남아시아 시장
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까지 수출
함으로써, 각국의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K-POP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
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모조품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
는 우리기업의 대부분은 세관 지재권 등
록제도 등 현지 국가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구제 절차를 몰라 지재권 침해로부터
무방비한 상태로 그 피해를 입고 있어,
현지 국가의 지재권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한 지재권은 총
1만 6천여 건이나, 그 중 한국 권리자의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미국과 일본기업의
등록 건수는 각각 1천4백여 건(8.75%),
960여 건(6%)으로 이미 선진국들은 중
국 세관의 지재권 등록 제도를 적극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을 이용한 모조품 단속은 모조품
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신청인이 직접 해
당 세관에 신고하여 압류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단속근거가 부족하여
대부분 국가의 세관들은 지재권 등록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관 지재권 등록 제도를 활용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모조품에 대한 자발적
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속을 통
해 얻은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후 손해 배
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자발적인 단속으로 모조
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모조품의 몰수 및

KIPO NEWS

벌금 부과를 위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모조품 단속에 대한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1) 발명진흥법 제50조의 3 규정에 의해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 종합 지원 센터
- 2)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 3) 세계관세기구(WCO)의 모조품 현황보고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5~7%(5,120억 달러 상당)를 모조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7%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오스람 LED 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은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하여 삼성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오스람 특허 : 별첨 1)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하여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엘지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엘지 7건)에 대하여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엘지-오스람 : 23건, 오스람-삼성/엘지 : 17건)을 제기하였고,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다투어 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법원에 침해소송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 쟁점이 많고 제출된 증거가 반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양측이 이처럼 치열한 '특허전쟁'에 뛰어들어든 것은 최근 LED 분야의 시장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LED는 단순 발광소자 기능을 넘어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녹색산업 진흥의지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LED 시장은 전년에 비해 9.8% 성장하였고, 특히 조명시장에서의 LED의 수요는 같은 기간 44%의 급성장을 보였다.

이 떠오르는 황금시장의 68%를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그중 상위 2~4위에 삼성, 오스람, 엘지가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어쩌면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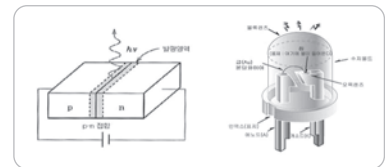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담당 심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의 기회는 부여하되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람 LED 특허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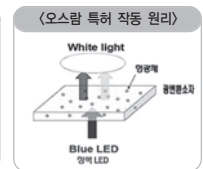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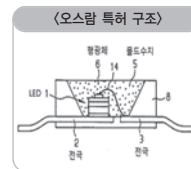
LED(Light Emitting Diode : 발광다이오드)

- LED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인 PN접합에서 전극으로부터 반도체에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소자



오스람 LED 특허의 '화이트 컨버전' 기술

- LED는 반도체의 재질에 따라 발생하는 빛의 파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색의 발광다이오드를 제조
- 오스람 특허는 백색광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고효율 청색 LED 칩을 내장한 후 그 상부에 다양한 형광체를 배치하여, 균일한 백색광을 얻고 제조가 간단한 특징이 있음



제공 특허청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QUIZ

1. 틈새마케팅이라고도 하며, 소수의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마케팅
2. 최정상 호텔이 준비하기로 유명한 두바이에 오픈한 한국인 소유의 첫 5성급 호텔은?
3. 지출이 많은 연령층에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일정연령 이후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

- ▶ **박대근 독자** _ 이번 호에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인정된 특허들은 정말 다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개콘을 볼 때마다 과연 저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란 궁금증이 생겼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주신 것 같습니다. 읽을 때 지루하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 ▶ **김현찬 독자** _ 평소 상표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유사상표 관련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칭호'에 대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상표를 네이밍 하기 전, 적용되는 기준도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 ▶ **박혜옥 독자** _ 발명만화를 보았는데, 내용도 쉽고 재미있어서 중학교 다니는 제 아들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5월호 퀴즈 정답

1. 미포머족
2. 헬싱키 프로세스
3. 파레토의 법칙

퀴즈 정답자

- 박대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김현찬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박혜옥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KIPA NEWS



우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특허기술거래와 R&BD 연계체계 본격 가동

초 근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개발인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난 5월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특허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회는 특허기술 마케팅을 통한 수요자 발굴을 비롯,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도입·기술보강 전략을 제공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개발·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외부로부터 효율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를 정부출연(연)의 실용화 기술 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공조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특허기술거래와 R&BD를 연계한 새로운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16개 기관 지원시책기관으로 참여



우 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경제부 지원 하에 있는 16개 지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12년도 선정기업 37개사 대표들에게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중소·중견기업 CEO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 "이들 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선정기업별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 직무성과계약 체결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관리 다짐

우 리회는 지난 5월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전사 (부회장 ⇄ 본부장) 및 단위조직(본부장 ⇄ 팀장 및 사무국장) 간의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 졌다.

올해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산출물) 지표의 비율 을 증가시키는 등 23개의 전사 성과지표(KPI)를 새로이 정립하였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올해는 우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예년보다 경영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성과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회 청렴서약식 가져

부패예방과 청렴문화 정착 위해



우 리회는 지난 5월 29일, 한국지식 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 부패 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서약 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은 임원 및 팀장들이 솔 선수범해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며, 자율적 인 윤리경영 실천분위기를 만들자는 의 도로 추진됐다.

경영진의 지속적인 청렴의식을 제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마음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청렴서약 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영 부회장은 “평소 청렴하고 검 소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화합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KIPA NEWS

우리나라, 2012 말레이시아 발명전에서 수상 쾌거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에서 은상 1건 등 총 3건 수상
아시아청소년 국제발명전 금상 3건 등 총 10건 수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 발명전에 발명품을 출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12 말레이시아 국제발명품전시회(이하 말레이시아 발명전)' 과 '2012 아시아청소년 국제발명품전시회(이하 아시아청소년 발명전)' 에서 총 8점의 작품을 출품해 중복 수상을 포함, 13개의 상을 수상했다.

말레이시아 발명전 출품작은 금오공과대학의 하재상·최현진 학생으로 '삼차원 변형이 가능한 가변 멀티콘센트'를 출품해 은상과 대만발명협회 특별상, 러시아 세베르스탈(severstal) 기업 특별상을 수상,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말레이시아국제발명전과 함께 개최된 아시아청소년 국제발명전에서 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금상 3건, 은상 4건, 특별상 3건 등 총 10건을 수상했다.

금상 수상작은 장수호(배재고) 학생의 「덕트용 청소기구」 김재홍(평택도곡중) 학생의 「탈취 기능이 구비된 변기」 최가현(양재고) 학생의 「자동 회전 조절 모니터」이며, 은상 수상작은 강희석·진윤호(한영외고) 학생의 「빛물의 에너지를 활용한 빗물 옥상 펌핑 및 빗물유입 자동관리를 위한 장치」 이건희(용인태성고) 학생의 「무계중심을 이용한 압전소자 복합 발전기」 주승권(현대고) 학생의 「다용도 안전 쟁반」 연희연(동인천여중) 학생의 「지우개 찌꺼기 제거장치」 등이다.

특히 장수호 학생은 대만발명협회 특별상과 러시아발명협회 특별상을, 최가현 학생 역시 대만발명협회 특별상을 동시 수상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발명전과 아시아청소년 발명전은 각각 24회째와 3회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15개국 860여 점이 출품됐다.

2012 말레이시아 국제발명전 수상 현황

권리자명	단체명	발명(고안)의 명칭	수상 현황
하재상 최현진	금오공과 대학	삼차원 변형이 가능한 가변 멀티콘센트	은상, 대만발명협회 특별상, 러시아 Severstal 기업 특별상

WIPO 사무차장 우리회 방문



세계여성발명포럼 참석(기조연설) 차 방한 중이던 WIPO 사무차장 (Mr. Wichard)이 지난 5월 3일 오후 5시, 우리회를 방문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이날 우리회 사업을 소개하고, 양 기관은 전반적인 발명진흥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회와 WIPO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2012 아시아청소년 국제발명품전 수상 현황

출품자	학교/학년	발명(고안)의 명칭	수상 현황
김재홍	평택도곡중학교	탈취 기능이 구비된 변기	금 상
최가현	양재고등학교	자동 회전 조절 모니터	금상, 대만발명협회상(특별상)
장수호	배재고등학교	덕트용 청소기구	금상, 대만발명협회상(특별상), 러시아발명협회상(특별상)
강희석 진윤호	한영외국어 고등학교/3	빛물의 에너지를 활용한 빗물 옥상 펌핑 및 빗물유입 자동관리를 위한 장치	은 상
이건희	용인태성 고등학교/3	무계중심을 이용한 압전 소자 복합 발전기	은 상
주승권	현대고등학교	다용도 안전 쟁반	은 상
연희연	동인천여자 중학교	지우개 찌꺼기 제거장치	은 상



2012 IP 국제교육 'PADIAS 3기' 개최

수강생 전원 미국 최고 IP 전문 Law School 'FPC' Certificate 취득
(FPC : Franklin Pierc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t the UNH School of Law)

우 리회는 작년 2기에 이어 지난 3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12주간(50시간) '미국특허 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3기 과정을 개최, 미국 IP 전문 로스쿨인 Franklin Pierce Center의 실무 과정을 제공하였다.

이번 과정은 삼성전기,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기업 및 법률사무소,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 다양한 특허업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1교육장에서 수강생 전원이 수료하였으며, 미국 로스쿨 교수 및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로 구성된 교수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 중 B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FPC로부터 정규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WIPO-KIPO 교육 참가 개도국 심사관 우리회 방문

글로벌 IP 이러닝 콘텐츠 소개
개도국 대상 IP 교육사업 홍보



칠레, 중국 등 12개국 상표심사관 및 관계자 20명이 지난 5월 2일 오전 11시, 우리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진행된 WIPO 상표법·상표심사 연수차(최빈국 특허역량 향상을 위한 WIPO KTF사업)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방한 중이었다.

조은영 부회장은 이날 개도국 상표심사관에게 우리회 사업을 소개하고 특히, 특허청과 우리회, WIPO·APEC과 공동 개발한 글로벌 IP 이러닝 콘텐츠 및 개도국 대상 IP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KIPA NEWS



우리회 변리사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특허고민 해결사'로 나섰다

소상공인방송(yes tv) 「성공예감 yes I can」 프로그램 출연

우리회 변리사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특허고민 해결사'로 나섰다. 이재훈, 주한중, 박상완, 서정열, 윤귀상 변리사. 총 5명의 주인공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소상공인방송(yes tv) 「성공예감 yes I can」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특허 관련 어려움과 고민을 다각도로 해결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사업장 상호로 사용 가능할까?」「내가 개발한 상품디자인, 타인이 디자인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면?」「영업방법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의 흥미로운 주제가 다뤄졌으며, 꼭 필요한 알짜배기 특허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소상공인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6월 11일부터 한국경제 tv(오후 9시)로도 재방송될 예정이다.

KIPA 사회봉사단, 사랑실천 나누기

무료급식 제공 등 사랑과 나눔의
현장 몸소 체험



우리회 조은영 KIPA 사회봉사단장(부회장)은 지난 5월 3일, 소외된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다일복지재단(밥퍼나눔운동본부)을 방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였다.

우리회 사회봉사단 30여 명은 노숙자와 몸이 불편한 어르신께 점심식사를 대접했고, 식사 후에는 식당 환경정리 등 마무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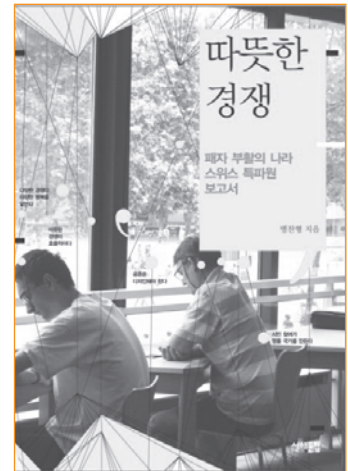
2007년 4월에 발족한 'KIPA 사회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비전을 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뜻한 경쟁

폐자 부활의 나라 스위스 특파원 보고서 「따뜻한 경쟁」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유럽본부 주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 맹찬형이 스위스에서 한국을 진단하고 한국 현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21세기 '명품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의식, 정치인과 공무원의 공직 담당 자세, 경쟁과 공존이 융합되는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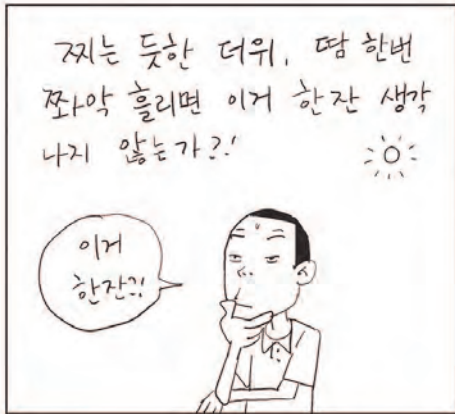


저 자 맹찬형
출판사 서해문집



콜래 발명이야기 _ 식혜

글·그림 김민재



자. 그렇다면 과연 식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 요새 식혜는 언제든 돈을 내면 사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 되어서 사람들은 식혜의 제조법을 잘 알지 못한다.



식혜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제조법은 1740년경의 '수문사설' 1800년경의 '규곤요람' '시의전서'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식혜를 만드는 과정은 몹시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롭다. 맛을 내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자. 이제 우리고유의 음료 식혜가 좀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다이어트, 빠르게 대신 현명하게 하자!

바캉스 시즌이 다가오자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주로 20~30대 젊은 여성들의 다이어트 문의가 많았던 것이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때 이른 더위로 인해 얇고 짧아진 옷 사이로 그동안 감춰왔던 살이 드러나면서 다이어트로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많다. 이맘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중을 줄인다. 그로 인해 탈모, 골다공증, 빈혈과 같은 건강 악화나 요요 현상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다이어트에 대한 근본 목적을 상실한 채 체중이라는 숫자의 빠른 변화에만 집착한다는 데 있다.

다이어트란,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이고 인체 대사 기능을 정상화시켜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지방, 근육, 수분 등 체성



김소형
한의학 박사

분의 비율은 배제하고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착하면서 무리한 운동과 함께 무작정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에 전념하고 심지어는 적절하지 못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방법이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이기 보다 필요한 근육과 수분 등을 감소시키고 대사 작용을 망가뜨리게 되어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근본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식습관이 부작용 줄인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이요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식이요법은 다이어트의 근간이 되기 때문인데, 가장 먼저 현재까지 자신의 식습관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만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식사습관에 있기 때문인데,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과식과 폭식을 조장하고 비만을 악화시키며, 신진대사를 방해해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을 만든다. 따라서 살을 빼는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필수다. 지금까지 식사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식사량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식사량이 일정하지 않고 소식과 과식을 반복한다면 인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충분한 양만큼 얻을 수 없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영양분을

자꾸만 저장하려고 들어 살이 찌기 쉽다. 따라서 우리 몸이 안심하고 음식을 소화, 흡수, 배설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을 섭취해야 한다.

더불어 섭취량은 다이어트 목표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이전보다 소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식사량은 갑작스럽게 줄이는 것보다 우리 몸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줄여나가도록 한다.

먹거리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푸드, 가공 식품,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등은 삼가야 하며, 알코올과 커피, 청량음료 등도 피해야 한다. 다이어트 식단

으로는 한식이 가장 좋은데, 각종 영양소는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기름기가 적어 다이어트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한식으로 먹되 칼로리가 낮은 식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밥은 쌀밥보다 보리밥이나 발아 현미밥, 검은콩밥 등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이는 칼로리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고,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한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소비할 뿐 아니라 건강을 악화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때문이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장 기능을 높여 다이어트 도중 발생하기 쉬운 변비를 예방해준다.

꾸준한 운동이 해답

꾸준한 운동으로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이요법이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운동은 체중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면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같은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요요현상을 방지하고 체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젊었을 때의 체중 감량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두자.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므로 걷기,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대신 운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만약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진행해도 체력만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몸의 기력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한다.

운동과 함께 평소 경락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는 것도

좋은데, 팔뚝살이 늘어져서 보기 민망하다면 소해혈을 지압해보자. 소해혈은 팔을 구부렸을 때 접히는 주름에서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지점으로 팔 안쪽에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 수시로 자극해주면 좋다. 특히 스트레칭이나 운동 후 혹은 목욕 후 몸이 따뜻할 때 팔을 주물러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팔에 탄력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체비만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입기가 부담스럽다면 승부혈을 눌러주면 좋다. 엉덩이 아래 주름의 중간 지점 양쪽에 있는 승부혈은 허벅지 부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허벅지에 뭉친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발 뒤꿈치를 살짝 들면서 아랫쪽에서 위쪽을 향해 중지로 눌러주면 효과적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로 인해 요요현상과 각종 부작용으로 건강과 아름다움 모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 나간다면 올 여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2. 6



뮤지컬 - 시카고

2012. 6. 10 ~ 2012. 10. 7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무대



공연장소 : 디큐브아트센터
 공연기간 : 2012. 6. 10 ~ 2012. 10. 7
 관람시간 : 160분
 출연진 : 인순이, 최정원, 윤공주, 아이비, 남경주, 성기윤, 김경선 등

The Hottest Stage in the World!

검은 망사 스타킹에 씨스루 의상을 입은 8등신 팜프파탈의 여배우
 망사조끼 안으로 식스팩 복근을 자랑하는 남자배우
 그들이 선보이는 관능미 넘치는 밥 파시 안무
 1920년 보더빌 무대를 그대로 살린 스타일리쉬한 무대
 그리고 박칼린 감독이 이끄는 15인조 빅밴드가 선보이는 농염한 재즈 음악의 향연

The Sexiest Actor in the World!

2012년 뮤지컬(시카고)는 우리시대 최고의 디바 인순이와 뮤지컬(시카고) 한국 공연의 역사 최정원이 벨마 켈리역을,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기윤이 빌리 플린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2012 NEW Roxie 탄생
 섹시 카리스마 아이비 그리고 뮤지컬 프린세스 윤공주,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무대 위에서 그 매력을 무한 발산하는 핫한 두 명의 여배우가 선보일 새로운 록시, 2012년 뮤지컬(시카고)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렇게 초호화 캐스팅으로 구성된 최강 멤버들은 다시 한 번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스태프들과 함께 더 뜨겁고 강력한 2012 뮤지컬(시카고)를 선보일 것이다.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아이디어의 시골티즈가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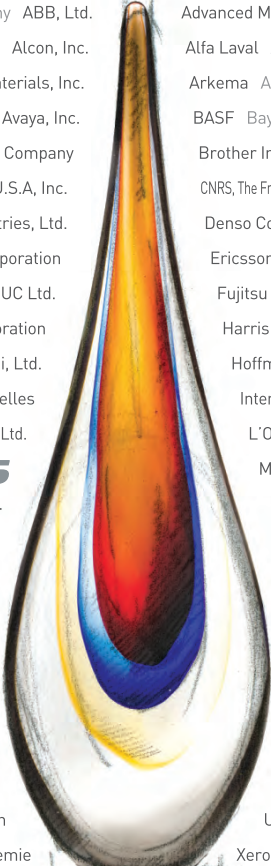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결코 멈추지 않는 혁신, Innovators of Innovation, LSIS

- 
- 3M Company ABB, Ltd.
 - Alcatel-Lucent Alcon, Inc.
 - Apple, Inc. Applied Materials, Inc.
 - Atlas Copco Avaya, Inc.
 - Boeing Bristol-Myers Squibb Company
 - Cheil Industries, Inc. Chevron U.S.A, Inc.
 - Corning Incorporated Daikin Industries, Ltd.
 - DuPont Eaton Corporation
 - Exxon Mobil Corporation FANUC Ltd.
 - Goodyear Tire & Rubber Company Hamilton Sundstrand Corporation
 - Hilti Corporation Hitachi, Ltd.
 - Honeywell International Inc. IFP Energies Nouvelles
 - Japan Aviation Electronics Industry, Ltd.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Co., Ltd.
 - LG Electronics, Inc. **LSIS**
 - Motorola, Inc. Murata Manufacturing Co., Ltd.
 -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Nitto Denko Corporation
 - Philips Procter & Gamble Company
 - Rhodia Operations Rockwell Automation, Inc.
 - Royal Dutch Shell Saint-Gobain
 - Sandvik Intellectual Property AB Scania
 - Sharp Corporation Shin-Etsu Chemical Co., Ltd.
 - Societe de Technologie Michelin Sony Corporation
 - Symantec Corporation Synopsys, Inc.
 - Toshiba Corporation Toyota Motor Corporation
 - Volvo Wacker Chemie
 - Advanced Micro Devices, Inc. Airbus
 - Alfa Laval Analog Devices, Inc.
 - Arkema ASML
 - BASF Bayer
 - Brother Industries, Ltd. Canon, Inc.
 - CNRS, The French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Commissariat à l'Energie Atomique
 - Denso Corporation Dow Chemical Company
 - Ericsson Ethicon, Inc.
 - Fujitsu Limited General Electric Company
 - Harris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 Hoffmann-La Roche Honda Motor Company, Ltd.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ntel Corporation
 - L'Oréal LSI Corporation
 - Microsoft Corporation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 NCR Corporation NEC Corporation
 - Olympus Optical Panasonic Corporation
 - Qualcomm Incorporated Raytheon Company
 - Rohm and Haas Company Rosemount, Inc.
 - Samsung Electronics Co., Ltd. SanDisk Corporation
 - Seiko Epson Corporation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Ltd.
 - Siemens Snecma
 -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 TE Connectivity Tetra Laval
 - Unilever UOP LLC., a Honeywell Company
 - Xerox Corporation Yamaha Corporation



THOMSON REUTERS
TOP100
GLOBAL INNOVATORS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자 통신사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성공률, 특허 보유 수, 특허 피인용도, 특허 포트폴리오의 해외 접근성 등의 질적, 양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100대 혁신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오직 삼성전자, LG전자, 제일모직, 그리고 LS산전만이 선정되었습니다.